

성과관리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

2007. 11. 30

 서울행정학회

SAPA 서울행정학회

제 출 문

통계청 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성과관리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1. 30

서울 행정학회
회장 김태룡

연구진 한중희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영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SAPA 서울행정학회

제 목 차 례

I.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향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1
3. 연구의 방향	2
제 2 절 성과관리의 이론	3
1. 성과관리의 개념	3
2. 성과관리의 단계	4
제 3 절 정부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제도화의 방향	9
1.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9
2. 평가제도 간 연계·통합화	10
3. 자체평가 역량 강화	10
4. 평가 결과의 활용 강화	11
5. 평가예산 확보	12
제 4 절 우리나라 평가환경 변화와 제도	13
1. 우리나라 평가환경의 변화	13
2. 통합 정부업무평가	14
II. 통계청 성과관리 분석 및 개선	19
제 1 절 관리과제 I	21
1. 전략목표 I에 대한 분석 및 개선	21

제 2 절	관리과제 II	40
1.	전략목표 II에 대한 분석 및 개선	40
제 3 절	관리과제 III	65
1.	전략목표 III에 대한 분석 및 개선	65
제 4 절	관리과제 IV	83
1.	전략목표 IV에 대한 분석 및 개선	83
III. 해외사례		101
제 1 절	미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01
1.	평가제도의 개관	101
2.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103
3.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106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09
제 2 절	캐나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11
1.	평가제도의 개관	111
2.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112
3.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120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22
제 3 절	영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23
1.	평가제도의 개관	123
2.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124
3.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127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28

제 4 절 프랑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29
1. 평가제도 개관	129
2.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132
3. 자체평가의 운영 실태	138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40
제 5 절 호주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42
1. 평가제도 개관	142
2.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145
3.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146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47
제 6 절 일본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48
1. 평가제도의 개관	148
2.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152
3.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53
IV. 결 론	159
제 1 절 관리과제별 현황	159
1. 관리과제 I	159
2. 관리과제 II	161
3. 관리과제 III	163
4. 관리과제 IV	165
제 2 절 통계청 성과관리 종합	167
부록	171

표 차례

<표 2-1> 목표 및 과제현황 개선 전후 비교표	19
<표 2-2> 전략목표 I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22
<표 2-3> 전략목표 II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41
<표 2-4> 전략목표 III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66
<표 2-5> 전략목표 IV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84
<표 3-1> GPRA의 구성 체계	104
<표 3-2> 성과지표의 예	108
<표 3-3> 기대치의 개념	114
<표 3-4> 지 표	115
<표 3-5> 척 도	116
<표 3-6> 전략기획 과정	117
<표 3-7> 재정위원회 사무처 성과보고 체계	118
<표 3-8> 서비스 개선 성과보고 체계	119
<표 3-9> 도시정책 평가지표	131
<표 3-10> 재정법에 따라 작성될 성과보고서 및 의회의 예산성과 심의 ..	136
<표 3-11>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예시	137
<표 3-12> 재정감찰총국의 분야별 평가 활동 비중	138
<표 3-13> 호주의 평가제도 개관	143
<표 3-14> 평가 대상에 따른 평가 방식	150
<표 3-15> 행정평가의 실시 근거	153
<표 3-16> 행정평가의 도입 상황	154
<표 3-17> 행정평가의 대상	154
<표 3-18> 평가결과의 공표 상황	155
<표 3-19> 평가결과의 활용 방법	155
<표 4-1> 통계청과 특허청 지표 비교	167

그림 차례

<그림 2-1> 목표 및 과제현황 개선전후 비교	20
<그림 3-1> 직렬식 성과예산(CPB) 모형	106
<그림 3-2> 부처별 PSA의 구조	125
<그림 3-3> 프랑스 정책평가 체계 흐름도	133
<그림 3-4> 평가 업무 추진 체계	134
<그림 3-5> 기관별 평가 역할	144

SAPA 서울행정학회

I. 서론

SAPA 서울행정학회

I.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향

1. 연구의 목적

- 20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과 20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 통계청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통계청 업무의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검증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
 - 성과관리와 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평가 업무가 전개 되도록 함

2. 연구의 내용

- 20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
 - 2008년 통계청 업무 주요정책과제 등 5개 부문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대표성 및 타당성 검토
 - 2008년 통계청업무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보완방향 제시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가 부절적인 경우 변경 및 대체지표 제시(지표 변경 및 대체 시 변경 사유 및 검토 사유 제시)
 - 과거 통계자료, 과제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목표치 제시

- 20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상반기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리과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성과지표 수정 검토
 - 목표달성도 등을 검토하여 보완사항을 도출
 - 58개 관리과제 9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가 극도로 높거나 낮은 지표에 대한 목표치 변경 검토
 - 향후 지표 보완 추진 시 개선지표 합의

3. 연구의 방향

-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기관의 목표와의 동일한 방향성 제시로 기관의 변화를 반영함
- 통계청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및 정보화 부문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검토 후 수정·보완하여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

제 2 절 성과관리의 이론¹⁾

1. 성과관리의 개념

- 최근 공공사업의 성과측정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성과에 대한 증거가 요구되고 있음
- 성과(performance)라는 용어의 정의는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용어와 비슷하나 성과는 능률성과 같은 생산성의 좁은 의미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함
- 따라서 성과는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서비스 품질, 서비스 형평성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임
- 성과란 조직 및 그 구성원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 정책 및 활동 등의 계획 또는 목표에 대한 실적 또는 효과정도를 의미함
- 위의 개념을 공공 부문의 정책순환 과정, 즉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결과(result)에 적용시켜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음
 - 전통적 성과관리방식에서 주장되어 온 성과의 개념 : 투입이나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산출과 결과를 생산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방식이 강조하는 성과의 개념 :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산출이나 결과가 목표 또는 계획에 대하여 이른 효과에 맞춤
- 이와 달리 통합적 성과관리는 성과는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를 계획 또는 목표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추진, 이행한 정도를 의미함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란 조직의 비전 또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일련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집계, 관리, 환류하는 과정임

1) 이윤식 외(2006),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를 재정리

- 성과관리는 3개의 상호의존적인 활동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 요소는 일련의 순환적인 과정을 필요로 함
 - 첫째, 임무, 목표, 전략에 대하여 주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함
 - 둘째, 성과를 증명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측정 시스템을 개발함
 - 셋째,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성과정보를 사용함
- 즉 성과관리란 기관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측정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획득된 성과정보를 의사 결정에 사용하는 과정임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대체로 협의적 성과관리와 광의적 성과관리로 나눌 수 있음
 - 협의적 성과관리 : 투입-과정-산출-결과 중 일부분에 초점을 둠
 - 광의적 성과관리 : 투입-과정-산출-결과로 이어지는 4단계 과정 모두를 포괄하되 각각을 가급적 핵심화하는 방식임
- 통합적 성과관리는 좀더 포괄적인 최광의의 성과관리를 정의하는 것으로 투입-과정-산출-결과의 모든 단계에서 3E, 즉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포함하되, 그 밖에 다른 가치들을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념임

2. 성과관리의 단계

-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성과계획, 성과측정, 성과평가, 평가 결과의 활용이라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성과계획

- 성과계획은 기관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활동 계획임

- 임무 : 기관설치의 근본 목적 및 기관 사업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임. 따라서 임무는 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사업의 고객을 명시적으로 파악함
 - 해당 사업이 고객과 일반 대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둠
 -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요한 목적을 파악함
 -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함
- 전략목표 : 기관의 목표·가치·기능 등을 포함하고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며, 전략목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가치중립적, 일반적 표현이나 열망을 나타내는 표현은 삼가야 함
 - 간결한 표현과 핵심사업 영역을 위주로 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여야 함
 - 실국 등의 조직 체계에 따라 설정될 필요는 없음
 - 정부가 추구하는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성과목표 :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주요 사업 또는 사업 진단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일련의 구체적인 목표이며, 성과목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함
 - 국회, 이해 당사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사업 성과에 대한 예상된 수준을 알려 줄 수 있도록 설정해야함
 - 동일한 지표에 의하여 목표와 성과가 측정 가능하도록 여러 또는 단일 사업을 집합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함

2) 성과측정

(1)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사업의 임무와 우선 순위의 가장 중요한 단면을 포착하여야 함. 적절한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음
 - 성과지표와 목표치 모두를 포함해야 하고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연간 및 장기적 지표와 목표치 모두를 포함하여야 함
- OMB(2004)가 제시하는 적절한 성과목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양보다는 질 : 성과목표는 사업의 핵심 임무 및 사업이 달성하려는 결과와 연관되어야 함
 - 예산 결정의 중요성 : PART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는 예산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 명확성 : 성과목표는 성과측정 결과의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실행 가능성 : 성과목표는 실행 가능해야 하지만, 저항을 회피해서는 안됨
 - 협력 : 정부기관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이므로 영역은 고려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야 함

(2) 성과측정

- 성과측정은 고객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었던 사업 또는 활동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책무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성과측정은 포괄적 개념으로서 사업의 투입, 산출, 중간 결과, 또는 최종 결과의 정규적인 측정을 의미함
-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의 결정은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을 반영함
 - 성과 데이터의 사용 의도
 -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해 당사자들 가치의 우선 순위임
- 성과의 의미를 정의하는 임무,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적절한 합의하에서, 기관들은 전달된 재화와 서비스, 서비스된 대상, 서비스 품질과 능률성, 성취된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성과측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성과측정 시스템은 전략이 집행된 정도와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 성과에 관한 자료는 행정 기록, 서베이, 전문가 판단 등에 의하여 수집됨
- 성과측정의 적절성 여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
 - 결과증명 :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각 조직의 수준을 알려 주

어야 함

- 간결성 : 조직 수준하에서 각 목표의 성과지표 수는 꼭 필요한 것으로 제한하여야 함
- 다중 우선 순위 고려 : 성과측정 시스템은 품질, 비용, 고객 만족 및 이해 당사자 관심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함
- 책임 있는 사업과 연계 : 성과지표는 사업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부서와 연계되어야 함
- 완전성, 정확성 및 일관성 : 성과지표는 타당성, 신뢰성 및 적시성을 가져야 함

3) 성과평가

- 성과평가는 성과관리 대상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할 때 계획된 장·단기 목표가 얼마나 경제적·능률적·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가의 여부를 분석·측정·평정하는 것으로, 다른 가치들, 예컨대 민주성, 합목적성, 형평성, 적합성 등도 성과의 기준으로 추가 반영하는 것이 가능함
- 그러나 활동과 결과 간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관계로, 실제로는 성과평가보다 성과측정 결과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수준임

- 성과평가의 방법으로는 투입-처리-산출, 고객지향적 결과, 정치·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인 수준에서의 접근 방법, 조직 수준에서의 접근 방법, 환경 수준에서의 접근 방법 등이 있음

4) 측정 결과 또는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 결과의 활용은 측정 결과 또는 평가 결과를 다음 성과계획 및 활동·업무에 환류하고 반영하는 것임
- OECD는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을 합리화하는 것
 -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
 - 구체적 책무성 :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몇 가지 성과목표를 달성해야 할 법적 의무
 - 도의적 책임성 : 공무원들이 공복(公僕)으로서 법적 국민들에게 지는 도의적인 의무
-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성과정보에 대한 분석은 성과에 대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기관 성과관리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성과측정 이상의 것이 필요함.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관과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성과정보를 관리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임

제 3 절 정부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제도화의 방향²⁾

1.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 많은 선진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결과 지향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관리통제를 분권화하고, 인사 및 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관리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정부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됨
-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많은 평가제도들이 도입되었음
- 하지만 평가방법론적 역량의 부족과 평가문화의 미성숙 등에 기인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 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중복 평가의 효율적 해소 방안, 평가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 평가방법론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2004년에는 정부에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이 설치되었고, 1년여의 노력 끝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됨

2) 이윤식 외(2006),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를 재정리

2. 평가제도 간 연계·통합화

- 우리나라 공공 부문의 현행 평가제도들은 각 평가 주관기관이 개별적으로 법적 근거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여러 평가 주관기관들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평가 목적, 대상, 방법, 시기 등에서 필요한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중복성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평가 주관기관 간 연계는 평가제도 간 연계 또는 통합으로 이어져야 하며, 평가제도 간 통합은 평가지표의 통합, 평가 주체의 통합, 평가 시기의 통합 등이 있을 수 있음
-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 유사한 업무 또는 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연계를 통하여 한 가지 업무는 한 번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임
- 평가제도 간의 연계 또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 부처의 필요에 따라 다수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를 남설할 수 없도록 평가 법정주의를 명문화하거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같은 평가 총괄·기획·조정 을 담당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자체평가 역량 강화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평가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 자체평가의 중요성은 선진국들의 평가 시스템을 살펴보아도 명확해지는데, 대개의 경우 자율적인 자체평가가 평가제도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정 부처에 의한 다른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평가는 아예 없거나 최소화 되어있음

- 실효성 있는 자체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부서의 평가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자체평가 역량 강화를 단계를 살펴보면, 첫 단계는 평가 부서의 독립성 확보임. 이때의 독립성이란, 조직상 완전히 독립하여 외부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평가 업무 수행 시 자료의 획득과 분석 및 판단에서 평가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평가 역량 강화의 다른 측면은 전문성의 제고임.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여야 함
- 평가 역량 강화와 함께 자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에 대한 평가계획까지 함께 수립하게 하는 것임
- 현재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체평가 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평가 전담 부서에서 수행한 결과를 승인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라 할 수 있음

4. 평가 결과의 활용 강화

- IV. 해외사례에서 선진국의 평가 결과 활용사례들을 제시하였는 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음
 - 평가문화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함. 평가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업무의 책무성을 증진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됨
 - 따라서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 즉 정책담당관 또는 관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피평가자는 평가 결과를 통하여 담당 정책과 사업을 개선하는 데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함

5. 평가예산 확보

-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의 예산 편성시 평가를 위한 예산을 별도 책정하게 하는 것임
-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 기준을 개정하여 평가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면 될 것임
- 정부업무 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대상임
- 평가제도의 효율적 구축과 가동, 평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평가 전문 조직과 인력의 양성, 평가전문 교육과 훈련의 강화, 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완 등 국가 평가 역량을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 전담 예산이 일회성이 아닌 제도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일부 선진국처럼 평가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업예산의 일정 비율을 평가재원으로 배정하는 등의 법제 정비가 시급한 이유임

제 4 절 우리나라 평가환경 변화와 제도

1. 우리나라 평가환경의 변화

- IMF 관리 체제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개혁 조치들을 준비 시행하였음. 민간부분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정부 내적으로도 구조 조정이 핵심 사업으로 등장하였는바, 이를 위해서는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됨이 요구되었음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평가(1998.3~2006.3) 기능을 강화
 -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이른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업무평가의 법적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함
 - 다음 해(2001년)인 5월부터 동법에 의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함
- 그 결과 각 부처들은 자기 부처는 물론 다른 부처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경쟁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의 상당수는 각 부처, 청 등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과 지표로 시행되어 평가의 형식성이 증가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 나아가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자신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전개됨
- 그러나 현재 여러 부처에서 마련한 평가제도들이 정부의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선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지정을 받을 정도로 평가 관련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복평가 지적이 나오고 있음

2. 통합 정부업무평가³⁾

1) 도입배경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종전의 평가에 대해 개별·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 업무의 과중, 자체평가제도의 형식적 운영, 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그리고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편을 추진하였음
- 이에 종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대체하는 「국정평가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음

2) 추진체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종전의 정책평가위원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개편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조직관리), 기획예산처장관(예산관리), 중앙인사위원장(인사관리), 국무조정실장(주요정책) 등을 정부위원으로 포함하여 평가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전문가 9인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전반적인 평가제도 설계, 자체평가 결과 확인·점검 및 다수 부처 관련시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다음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

3) 국무조정실(2007), 정부업무평가 백서

○ 실무위원회

- 또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국무조정실 차장 및 정부업무평가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국무조정실 소속 1급 등 25인 이내로 구성 실무위원회는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함

○ 심사평가조정관실

-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 내의 심사평가조정관실(조정관 : 1급)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지원 기능 및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함
- 즉, 매년도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업무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평가대상 업무확정, 현장 확인 등 평가 실무와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관련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각 급 교육기관에 평가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담당관이 참석하는 연찬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평가의 종류

(1) 중앙행정기관 평가

-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되며,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며,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직접 평가를 실시함

○ 자체평가

-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대 부문으로 구성되는 바, 각 부처는 동 부문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① 주요정책과제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여 평가하되, 단순지원업무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제별로 분석적 계층화(AHP)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 ② 재정성과 : 일반재정사업 및 R&D 사업 등의 추진성과 및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 재정운용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③ 인사 : 인력관리계획,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성과관리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 ④ 조직 : 조직관리계획, 조직관리 업무의 적절성, 조직관리기반 구축 등 조직관리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 ⑤ 정보화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 유지·보수 등 평가실익이 없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II. 통계청 성과관리 분석 및 개선

SAPA 서울행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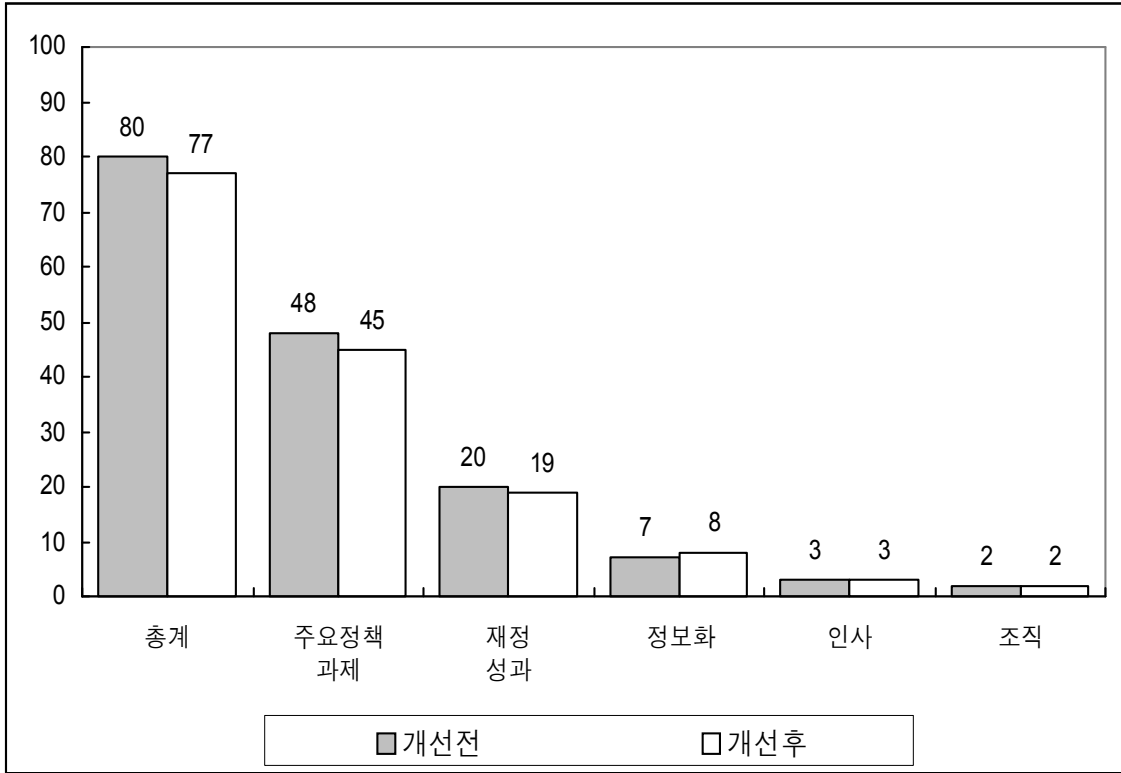
II. 통계청 성과관리 분석 및 개선

- 전략과제의 개수는 4개로 동일하며, 성과목표의 개수도 19개로 동일함
- 관리과제의 총개수는 80개에서 77개로 3개가 줄어들었으며, 과제별로 많은 변화가 보임
 - 주요정책 과제 수는 48개에서 45개로 3개가 줄어들었으며, 재정성과 과제 수는 20개에서 19개로 1개가 줄었음
 - 정보화는 7개에서 8개로 늘어났으며, 인사와 조직은 개선 전후가 같게 나타남

<표 2-1> 목표 및 과제현황 개선 전후 비교표

부 문		개선 전		개선 후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전략	목표	4	-	4	-
성과	목표	19	-	19	-
관리 과제	소 계	80	100%	77	100%
	주요정책 과제	48	60	45	58.4
	재정성과	20	25	19	24.7
	정보화	7	8.7	8	10.4
	인사	3	3.8	3	3.9
	조직	2	2.5	2	2.6

<그림 2-1> 목표 및 과제현황 개선전후 비교



제 1 절 관리과제 I

1. 전략목표 I 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 분	전략목표
개선 전	국가통계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가통계를 균형발전시킨다.
개선 후	

- 전략목표는 개선 전후에 수정사항이 없으나 전략목표의 주요내용에서 핵심내용의 추가를 필요로 하여 약간의 수정을 함

구 분	주요내용
개선 전	통계청 작성통계는 품질이 양호하지만, 그 밖의 기관작성통계는 품질개선의 여지가 많고, 지역통계, 사회통계 등 확충이 필요
개선 후	통계청이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 통계품질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기타 다른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는 품질개선을 위하여 통계청이 관리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지역통계, 사회통계 등에 대하여는 확충이 필요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선 전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기술하였으나, 개선 후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편리성을 추가하였음

<표 2-2> 전략목표 I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후	비고	전	후	비고
I -1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통계 제도를 정비한다.	주요정책 과제	3	2	-1	6	4	-2
	재정성과	1	1	0	1	2	+1
I -2 국가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 조정을 활성화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5	6	+1
	재정성과	1	1	0	1	2	+1
I -3 지역통계 작성지원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생산을 활성화한다.	주요정책 과제	2	1	-1	4	4	0
	재정성과	1	1	0	2	2	0
I -4 품질관리제도 정착 으로 국가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3	4	+1
	재정성과	1	1	0	1	2	+1
I -5 국제통계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통계를 선진화시킨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2	2	0
	재정성과	1	1	0	2	1	-1
계		16	14	-2	27	29	+2

1) 성과목표 I-1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통계제도를 정비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개선 전후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함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제도개선건수 - 전년도 실적을 반영	수정	○ 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제 이행을 - 5년 계획으로서 '08년도 계획분 이행완료
○ 통계분류 개발·개정건수 - 전년도 실적을 반영	수정	○ 통계분류 개발·개정건수 - '07년도 표준분류 개정을 완료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특수 분류 15종 전체를 3년간 개정

- 개선전의 지표 2개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은 관계로 “통계제도개선건수” 지표를 “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제 이행률”로 지표를 수정하였음
- “통계분류 개발·개정건수” 지표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의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전년도 실적을 반영”이란 단순한 목표치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근거추가에 필요성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지표의 이해를 도움

(1) 관리과제 I-1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시스템의 개선·정비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시스템의 개선·정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제도 개선 건수①-a)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제 이행률 ①-b)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제 이행률 ①-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대행 건수①-b)c)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대행 건수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② 	수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개선 완료된 사회통계 수②-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지원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분류개발·개정 건수③-a)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분류개발·개정 건수②-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질의 회신 소요일수③-b)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질의 회신 소요일수②-b)

- 주요정책과제 I-1-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지표의 유지와 함께 지표를 삭제하였음
 - “개혁과제 이행률”에 “통계제도 개선 건수”, “통계조사대행 건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두 지표가 국가통계시스템 개혁의 지표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
 - “통계제도 개선 건수”, “통계조사대행 건수” 그리고 “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제 이행률” 등의 지표는 단일지표화가 바람직함에 따라 “통계제도

- 개선 건수”는 단순히 건수를 관리하는 지표이므로 삭제하였음
- “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제 이행률”과 통계조사 조직이 취약한 기관의 통계를 대행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통계조사대행 건수”는 유지함
- 주요정책과제 I -1-정책②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삭제하였음
 - 주요정책과제 I -1-정책③과 통합이 가능하여 삭제함
- 주요정책과제 I -1-정책③의 성과목표는 약간의 수정이 있었으며, 성과지표는 유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 I -1-정책②의 통합으로 인하여 성과목표인 “통계분류체계의 선진화”를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지원”으로 수정하였음
 - 주요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제·개정하는 “통계분류개발·개정 건수”와 복잡 다양해지는 분류민원에 대한 회신을 위한 “분류질의 회신 소요일수”에 대한 성과지표는 유지함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정책추진①	유 지 신 설 수 정	▪ 통계정책추진①
· 분류교육이수자의 직무향상도①-②		· 통계분류개발·개정 건수①-②
		· 분류이용자에 대한 만족도①-③

- 재정성과 I -1-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지표의 신설과 함께 지표를 수정하였음
 - 통계정책 추진이라는 관리과제에서 “분류교육이수자의 직무향상도” 지표는 부적절함. 왜냐하면, 통계정책추진이 재정성과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내용과 분류항목과의 적합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직무만족도를 재정성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개선 전의 지표는 사업의 일부목적달성만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계제도의 향상정도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에 따라, “통계분류개발·개정 건수”는 신설되었으며, “분류교육이수자의 직무향상도” 지표는 효율적인 분류운영과 이용자 활용지원을 위하여 통합분류체계를 구축하는 “분류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지표로 수정하였음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2) 성과목표 I-2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국가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조정을 활성화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개선 전후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는 근거 제시를 위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유사·중복통계 정비율 - 전년도 실적을 반영	수정
○ 통계협력사업 건수 - 추세치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	수정
	○ 유사·중복통계 정비 조치율 - 정비대상기관과 최소한의 협의기간이 필요하여 조치율의 상향 조정의 한계가 있음. '08년 이후 점차적으로 향상고려
	○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 - 추세치 및 MOU체결기관 확대를 반영

- 근거추가 및 목표치 동일 근거 제시를 위하여 “유사·중복통계 정비율”을 “유사·중복통계 정비 조치율”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를 수정하였음
- “통계협력사업 건수” 지표도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를 수정하였음
 - 크게 추세치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지표의 이해를 도움

(1) 관리과제 I-2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에 대한 종합·조정 활성화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에 대한 종합·조정 활성화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법 교육 및 홍보건수①-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통계 정비율①-㉓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통계 정비 조치율①-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승인통계의 승인통계 전환 건수 ①-㉕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승인통계의 승인화 전환 건수 ①-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기본통계표준화 수①-㉗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기본통계표준화①-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강화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강화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사업 건수②-㉓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②-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약정 신규 체결 기관수 ②-㉔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약정 신규 체결 기관수 ②-㉔

○ 주요정책과제 I-2-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세부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명의 불일치로 인하여 성과지표는 지표의 신설과 함께 지표를 수정하였음

- 통계법령에 근거한 통계행정 수행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개정 통계법을 수록한 통계법령집, 통계작성기관이 지켜야할 통계법의 주요내용, 통계조정 실무 매뉴얼 등을 발간·배포하고, 통계작성기관 워크숍 등을 통한 통계법 교육을 실시하는 “통계법 교육 및 홍보건수” 지표를 신설하였음
- 세부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명의 불일치와 유사·중복통계 필요건수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추세에 대한 추가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유사·중복

통계 정비율“ 지표를 “유사·중복통계 정비 조치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는 ‘전년도 실적반영을 반영’으로만 되어있어 목표치 적절성 판단이 곤란함에 따라 자세한 설명으로 수정함

- “미승인통계의 승인통계 전환 건수“ 지표도 세부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명의 불일치로 인하여 “미승인통계의 승인화 전환 건수“ 지표로 약간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도 실적 및 목표가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고 미온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치 설정 및 설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음
- 주요정책과제 I-2-정책②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약간 수정을 하였음, 그러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약간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치를 수정하였음
 - “통계협력사업 건수“ 지표를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를 3년간 실적추세 및 약정 체결기관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 할 때 연간 달성할 수 있는 한계치로 볼 수 없어 상향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목표치를 24건에서 30건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통계협력약정 신규 체결 기관수“ 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07년(13기관)과 ‘08년도(13기관)의 목표치가 같은 바,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08년도에는 14기관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협력조정①	유 지	▪ 통계협력조정①
		·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
· 통계협력기관만족도①-㉠	신 설	
		· 통계협력기관만족도①-㉠
	유 지	

- 재정성과 I-2-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지표를 신설하였음
 -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 지표를 신설 추가하였으며, “통계협력기관만족도” 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07년도 목표치 보다 33%증가된 3점(5점 척도)로 설정하였으나 설정된 목표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목표치를 수정하였음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책 및 조정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3) 성과목표 I-3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지역통계 작성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생산을 활성화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개선 전후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변화가 없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계개발지원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실적을 반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계 생산대행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실적을 반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계개발지원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계 개발 지원은 지자체에서 개발하고자 신청한 통계에 대하여 지원 - '07년 실적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경남도내 각 10개시군구에서 신청한 고용통계의 지원에 대한 실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08년에는 '06년도 실적치(12종)에 도전목표 3종을 추가하여 15종으로 설정 ○ 지역통계 생산대행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처음 실시한 지역통계 생산 대행을 12개 지방청에 1건씩 12건으로 설정하였으며, '08년에는 도전목표 1종을 추가하여 13종으로 설정

- “지역통계개발지원 건수” 지표의 실적 및 목표치가 '07년 보다 '08년의 목표치가 낮게 설정된 바, 이에 대하여 자세한 이유를 추가하였음
- “지역통계 생산대행 건수” 지표의 실적 및 목표치 설정에서 13건을 실적으로 설정한 바, 이 근거에 대한 명확한 제시 및 세부설명이 필요하여 자

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1) 관리과제 I-3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지역통계개발의 지원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계 생산체계의 구축 및 개발 지원①
	· 생산체계 구축단계①-①
· 지역통계 개발지원 건수①-①	· 지역통계 개발지원 건수①-②
· 지역통계 생산대행 건수①-②	· 지역통계 생산대행 건수①-③
· 지역통계 지원사업 만족도①-③	· 지역통계 지원사업 만족도①-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계 생산체계의 구축② 	삭제
· 생산체계 구축단계②-①	

- 주요정책과제 I-3-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는 지표의 유지와 함께 주요정책과제 I-3-정책②의 성과지표를 통합하였음
- “지역통계 개발지원 건수”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를 ‘전년도 실적반영’으로만 되어 있어 목표치가 적절하지 못하며, 목표치를 10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3년간 실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목표치 상향 검토 또는 설정 근거 제시의 필요성에 따라 목표치 산출근거에 자세한 설명을 추가 보충하였음
- “지역통계 생산대행 건수” 지표도 목표치 산출근거에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목표치도 12종에서 13종으로 도전목표 1종을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 I-3-정책②의 성과목표는 삭제하였으나 성과지표는 주요정책과제 I-3-정책① 지표로 이전하였음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지역통계 작성기반의 조성①	유지	▪ 지역통계 작성기반의 조성①
· 지역통계 작성건수①-㉠	수정	· 지역통계 개발지원 건수①-㉠
· 지역통계 품질만족도①-㉡	유지	· 지역통계 품질만족도①-㉡

- 재정성과 I-3-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지표를 수정하였음
 - “지역통계 작성건수” 지표는 “지역통계 개발지원 건수”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에서 ‘07년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나, ‘08년도에 하향 조정된 이유를 목표치 산출근거에 자세하게 기술하였음. 하향 조정된 이유는 ‘07년도 실적에서 예상치 못한 경상남도내 각 10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고용통계의 지원에 대한 실적으로 목표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목표가 상향조정되었으나, ‘08년에는 평년(‘06년)의 12종에 도전목표 3종을 추가하여 15종으로 설정함
 - “지역통계 품질만족도” 지표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07년도 목표치보다 33% 증가된 3점(5점 척도)으로 설정하였으나 설정된 목표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의욕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에 따라 3.25에서 3.50으로 상향조정하였음

4) 성과목표 I-4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품질관리 강화로 국가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개선 후	품질관리제도 정착으로 국가통계 품질을 향상시킨다.

- 성과목표는 개선 전후 약간의 변함이 있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변화가 없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시스템 강화와 정확히 연관되지 않는 목표로 보이며, 다른 과제의 재정성과 측면이나 과제 내 성과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관계로 목표 명과 주요내용을 수정하였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개선 후
○ 품질진단 국가통계 중수 - 중기 국가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05.12월)을 반영	○ 품질진단 국가통계 중수 - 중기 국가통계품질진단 추진계획(05.12월)을 반영
○ 통계품질진단결과 품질향상도(%) - 전년도 실적을 반영	○ 통계품질진단결과 품질향상도 - 전년도 실적을 반영

- “품질진단 국가통계 중수” 지표와 “통계품질진단결과 품질향상도” 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통계품질진단결과 품질향상도” 지표의 실적 및 목표치는 도전목표를 설정하여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음

(1) 관리과제 I-4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에 대한 정기품질진단 실시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 품질진단 실시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진단 국가통계 종 수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진단 종 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진단 결과 품질향상도(%) 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진단 결과 품질향상도(%)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의 자체 품질관리 활성화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의 자체 품질관리 활성화②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품질관리 교육실시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지표 및 매뉴얼 개발 건수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품질지표 및 매뉴얼 개발 건수②-㉡

- 주요정책과제 I-4-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으며, 성과지표도 지표의 유지와 함께 약간의 수정이 있음
 - “품질진단 국가통계 종 수” 지표는 “통계품질진단 종 수” 지표로 약간 수정하였으며, 내용면에서는 조사주기 시작년도를 ‘09년~’13년에서 ‘06년~’10년으로 수정하였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통계품질진단 결과 품질향상도” 지표는 실적 및 목표치를 70%에서 80%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 I-2-정책②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에서는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을 실시하는 “자체품질관리 교육실시” 지표를 신설하여 지표를 보강하였음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품질관리 (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품질관리 (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품질관리사업 만족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품질관리사업 만족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품질진단 결과 품질향상도①-㉡

- 재정성과 I-4-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는 지표 유지 및 지표를 신설하였음
 - 제시된 지표 외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계품질의 개선정도를 보여주는 결과지표의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품질진단 개선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통계품질진단 결과 품질향상도” 지표를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실적에 반영하여 목표치를 80%로 설정하였음. 주요내용에서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책 및 조정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기타 부문에서는 품질관련 매뉴얼(자체품질진단 매뉴얼, 조사표설계 매뉴얼)을 추가하였음

5) 성과목표 I-5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국제통계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통계를 선진화시킨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사항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도 변화가 없으나, 주요 내용에서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하였음
- 시스템 강화와 정확히 연관되지 않는 목표로 보이며, 다른 과제의 재정성과 측면이나 과제 내 성과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관계로 목표 명과 주요내용을 수정하였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국제통계협력 교류 건수 - 과거실적 및 추세치를 반영	유 지	○ 국제통계협력 교류 건수 - 과거실적 및 추세치를 반영
○ OECD요구 통계항목 제공율 - 과거실적을 반영	유 지	○ OECD요구 통계항목 제공율 - 과거실적을 반영

(1) 관리과제 I-5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통계활동의 강화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통계활동의 강화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통계 협력 교류건수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통계 협력 교류건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통계정보 교류의 활성화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통계정보 교류의 활성화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OECD) 요구항목 제공율②-㉠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OECD) 요구항목 제공율②-㉠

- 주요정책과제 I-5-정책①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주요내용에서도 약간 설명을 조정함
- 주요정책과제 I-5-정책②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통계협력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통계협력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참가결과 정책반영율 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참가결과 정책반영율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참여국가 수①-㉠ 		삭제

- 재정성과 I-5-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는 지표 유지 및 지표를 삭제하였음
 -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참여국가 수” 지표는 단순 산출지표이므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하였음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가변성 정도 및 현재 상황에서의 가변성에 대한 대응책을 추가 설명하였음

제 2 절 관리과제 II

1. 전략목표 II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 분	전략목표
개선 전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기본 통계를 생산·제공한다.
개선 후	

- 전략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전략목표의 주요내용에서도 변화가 없음

<표 2-3> 전략목표 II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후	비고	전	후	비고
II-1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	주요정책 과제	7	7	0	13	13	0
	재정성과	0	0	0	0	0	0
II-2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통계를 개선한다.	주요정책 과제	7	7	0	14	14	0
	재정성과	0	0	0	0	0	0
II-3 조사체계 개선으로 대규모 통계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주요정책 과제	3	3	0	5	5	0
	재정성과	3	3	0	5	5	0
II-4 통계작성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통계의 이용 적합성을 높인다.	주요정책 과제	3	3	0	6	6	0
	재정성과	7	6	-1	17	17	0
II-5 조사환경에 적절한 조사방식의 활용으로 응답부담을 경감시킨다.	주요정책 과제	4	3	-1	9	8	-1
	재정성과	0	0	0	0	0	0
계		34	32	-2	69	68	-1

1) 성과목표 II-1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수정사항이 없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통계개발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욕적으로 설정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통계개발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개발 추세 및 개발정책수요에 따라 목표치 고려

- 성과지표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근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1) 관리과제 II-1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업실태조사 개발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업실태조사 개발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개발단계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업실태조사 개발단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동향통계개발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동향통계개발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콘텐츠통계 개발단계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콘텐츠통계 개발단계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판매액통계 개발단계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판매액통계 개발완료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동향통계 개발③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동향통계 개발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별 건설경기통계 개발단계③-㉠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별 건설기성통계 개발단계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주요업종 평균가동률 개발업종 수③-㉡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주요업종 평균가동률 개발단계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계 분석지표 개발④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계 분석지표 개발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소득분배계정 개발단계④-㉠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소득분배계정 개발단계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연관표 개발단계④-㉡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GRDP 추계개발지원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체감지수 개발단계④-㉢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체감지수 개발단계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통계 개발⑤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통계 개발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배관련지표 개발단계⑤-㉠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분배관련지표 개발완료⑤-㉠

· 사교육비통계 개발단계⑤-⑥	수정	· 사교육비통계 개발완료⑤-⑥
▪ 인구동향통계 개발⑥	유지	▪ 인구동향통계 개발⑥
· 출생전후기 사망 및 사산통계 개발단계⑥-①	유지	· 출생전후기 사망 및 사산통계개발 단계⑥-①
· 현재인구 개발단계⑥-⑥	유지	· 현재인구 개발단계⑥-⑥
▪ 불안전 취업에 대한 지표 개발⑦	유지	▪ 불안전 취업에 대한 지표 개발⑦
· 지표 개발단계⑦-①	수정	· 불안전취업에 대한 지표 개발완료⑦-①

- 주요정책과제Ⅱ-1-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음
 - “통계개발단계” 지표는 개발완료가 됨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업실태조사 개발단계”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실적 및 목표치도 '07년에는 개발계획수립에서 '08년에는 통계작성으로 목표치를 수정하였음
 - 주요내용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실태조사 개발단계” 지표로 수정함에 따라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음.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괄범위와 추진일정 등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1-정책②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1-정책③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제조업 주요업종 평균가동률 개발 업종 수” 지표를 “제조업 주요업종 평균가동률 개발단계”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를 지표의 수정에 맞게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1-정책④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근거추가의 필요성에 따라 목표치 산출근거를 추가하고,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지역산업연관표 개발단계” 지표를 “시·군·구 GRDP 추계개발 지원”

-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를 지표의 수정에 맞게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1-정책⑤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소득분배관련지표 개발단계” 지표를 “소득분배관련지표 개발완료”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를 지표의 수정에 맞게 수정하였음
 - “사교육비통계 개발단계” 지표를 “사교육비통계 개발완료”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를 지표의 수정에 맞게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1-정책⑥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1-정책⑦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지표 개발단계” 지표를 “불완전취업에 대한 지표 개발완료”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를 지표의 수정에 맞게 수정하였음

②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대책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의 필요성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2) 성과목표 II-2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통계를 개선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수정사항이 없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개선 건수 - 전년도 실적을 반영	유지	○ 통계개선 건수 - 전년도 실적을 반영

- 수정사항 없음

(1) 관리과제 II-2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광업·제조업 통계 개선①	유지	▪ 광업·제조업 통계 개선①
· 품목 공표율①-⑥	유지	· 품목 공표율①-⑩)
▪ 산업동향통계 개선②	유지	▪ 산업동향통계 개선②

II. 통계청 성과관리 분석 및 개선

· 기준년도 개편 단계②-①	수정	· 기준년도 개편 완료②-①
· 연쇄지수 작성단계②-②	수정	· 연쇄지수 작성완료②-②
· 계절조정 적용 통계 수②-③	수정	· 계절조정 적용 확대분야 수②-③
▪ 서비스업통계 개선③	유지	▪ 서비스업통계 개선③
· 도소매업판매액지수의 소비재 상품군 수③-①	유지	· 도소매업판매액지수의 소비재 상품군 수③-①
· 운수업통계조사의 업종 수③-②	유지	· 운수업통계조사의 업종 수③-②
▪ 연쇄방식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④	유지	▪ 연쇄방식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④
· 연쇄지수 월별 품목별 가중치 추정방법 개발단계④-①	수정	· 16개 시도별 연쇄지수 작성단계 ④-①
▪ 사회복지통계 개선⑤	유지	▪ 사회복지통계 개선⑤
· 가계조사 항목분류체계개편 단계⑤-①	수정	· 가계조사 항목분류체계개편 완료 ⑤-①
· 사회통계조사항목보완 건수⑤-②	유지	· 사회통계조사항목보완 건수⑤-②
· 생활시간조사 작성방법 개선단계 ⑤-③	유지	· 생활시간조사 작성방법 개선단계 ⑤-③
▪ 고용통계 개선⑥	유지	▪ 고용통계 개선⑥
· 청년층 부가조사 조사대상 확대 단계⑥-①	유지	· 청년층 부가조사 조사대상 확대 ⑥-①
· 인력실태조사 특정계층개발 항목 수⑥-②	수정	· 인력실태조사 특정계층 개발완료 ⑥-②
· 경제활동인구조사 계절조정 계열 확대 분야⑥-③	유지	· 경제활동인구조사 계절조정 계열 확대⑥-③
▪ 농어촌 유형별 지표의 작성⑦	유지	▪ 농어촌 유형별 지표의 작성⑦
· 지표작성단계⑦-①	수정	· 농어촌 유형별 지표작성 완료 ⑦-①

- 주요정책과제Ⅱ-2-정책①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2-정책②의 성과목표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음
 - 설비투자추계지수는 '09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기준년도 개편 단계” 지표는 “기준년도 개편 완료” 지표로 수정하였음
 - “연쇄지수 작성단계” 지표는 “연쇄지수 작성완료” 지표로 수정하였음
 - “계절조정 적용 통계 수” 지표는 “계절조정 적용 확대분야 수”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및 산출근거는 '08년 실적 및 목표치인 1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 설명을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2-정책③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2-정책④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음
 - “연쇄지수 월별 품목별 가중치 추정방법 개발단계” 지표를 “16개 시도별 연쇄지수 작성단계” 지표로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2-정책⑤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개편완료됨에 따라 “가계조사 항목분류체계개편 단계” 지표를 “가계조사 항목분류체계개편 완료” 지표로 수정하였음
 - “사회통계조사항목보완 건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여건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2-정책⑥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인력실태조사 특정계층개발 항목 수” 지표를 “인력실태조사 특정계층 개발완료”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근거설명의 추가가 필요하여 설명자료를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2-정책⑦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으며, 주요내용에서는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 지표의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표작성단계” 지표를 “농어촌 유형별

지표작성 완료” 지표로 수정하였음

②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의 추가와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3) 성과목표 II-3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조사체계 개선으로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수정 사항이 없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개선 후
○ 산업구조통계 체계개편단계	○ 산업구조통계 체계개편단계
○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단계	○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단계
○ 농림어업총조사 추진단계	○ 농림어업총조사 추진단계

-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단계” 지표는 08년 실적 및 목표치를 ‘현장적용점검’이 아닌 ‘시험 조사를 통한 추진방안마련’으로 자세하게 목표를 수정하였음

(1) 관리과제 II-3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통계의 체계개편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통계의 체계개편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통계 체계개편단계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통계 체계 개편단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인구주택총조사의 추진체계 확립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인구주택총조사의 추진체계 확립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단계②-㉠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총조사 사전준비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조사시 인터넷조사 비율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조사시 인터넷조사 비율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총조사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실시③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총조사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실시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총조사 추진단계③-㉠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총조사 사전준비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개선 건수③-㉡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방법 개선 건수③-㉡

- 주요정책과제 II-3-정책①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산업구조통계 체계개편단계”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계획달성도에 대한 산출근거를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 II-3-정책②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②-㉠를 수정하였음
 -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단계” 지표는 인구주택시험조사를 통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사전준비”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도 이에 맞게 수정하였음
 - “시험조사시 인터넷조사 비율” 지표는 개선전 산출근거에 ‘본조사 20% 목표’ 설명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 세부산출근거를 제시함
- 주요정책과제 II-3-정책③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③-㉠는 수정하였음
 - “농림어업총조사 추진단계” 지표는 농림어업시험조사를 통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농림어업총조사 사전준비”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도 이에 맞게 수정하였음

- “조사방법 개선 건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전주기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 산출근거를 수정함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경제센서스 개발(일반회계)	유지	▪ 경제센서스 개발(일반회계)
· 경제센서스개발 단계①-㉠	유지	· 경제센서스 개발단계①-㉠
▪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및 결과제공②	유지	▪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및 결과제공②
·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이용건수(만건)②-㉠	유지	·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이용건수(만건)②-㉠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품질만족도 ②-㉡	유지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품질만족도 ②-㉡
▪ 농림어업총조사 준비 및 결과제공③	유지	▪ 농림어업총조사 준비 및 결과제공③
· 농림어업총조사 이용건수(만건)③-㉠	수정	· 농림어업총조사결과 이용건수(만건) ③-㉠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품질만족도③-㉡	유지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품질만족도③-㉡

- 재정성과Ⅱ-3-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 재정성과Ⅱ-3-재정②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다만, 제시된 지표외에 오차율 등 통계에 정확성을 보여주는 결과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이용건수” 지표에서 이용건수의 '08년 목표치를 '06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한 점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의욕적으로 설정했

다고 보기 곤란함과 동시에 건수 수준유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 및 근거를 제시함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품질만족도” 지표도 위와 마찬가지로인 경우이며,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전년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수정함
- 위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 대한 수정은 성과지표 중 이용건수의 ‘08년 목표치를 ‘06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한 점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의욕적으로 설정했다고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 재정성과Ⅱ-3-재정③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으며, 제시된 지표외에 오차율 등 통계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결과지표를 추가할 필요성에 따라 지표를 수정하였음
 - “농림어업총조사 이용건수(만건)” 지표는 “농림어업총조사결과 이용건수(만건)”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를 결과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이에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함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품질만족도”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전년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수정함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의 추가와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4) 성과목표 II-4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통계작성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통계의 이용적합성을 높인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는 약간 용어를 수정하였음.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이용건수(만건) - 추세치와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 - 과거실적을 반영	유지
	○ 국가기본통계 이용건수(만건) - kosis 검색기능 간편화로 조회건수 대폭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의 50%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 - 표본개편에 따른 신규대상처 조사의 어려움 및 조사환경 악화에 따라 추세 최고치 적용

- “통계이용건수” 지표는 “국가기본통계 이용건수” 지표로 용어를 약간 수정하였으며,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추세치와 전년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함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으며, 응답률 목표치 정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하여 수정함

(1) 관리과제 II-4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국가기본통계의 적기 생산·제공①	유지	▪ 국가기본통계의 적기 생산·제공①
· 국가기본통계 이용건수(만건)①-㉠	유지	· 국가기본통계 이용건수(만건)①-㉠
· 동향통계 공표일자 준수율①-㉡	유지	· 월간 동향통계 공표일자 준수율①-㉡
· 통계조사결과 공표시기 준수율①-㉢	수정	· 분기·연간통계조사결과 공표시기 준수①-㉢
▪ 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②	유지	▪ 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②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②-㉠	유지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②-㉠
· 실지조사 정확성 측정점수②-㉡	유지	· 실지조사 정확성 측정점수②-㉡
▪ 사업체 모집단 DB의 활용도 제고③	유지	▪ 사업체 모집단 DB의 활용도 제고③
· 통계작성에 모집단 이용건수③-㉠	유지	· 통계작성에 모집단 이용건수③-㉠

- 주요정책과제 II-4-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에서는 약간의 용어를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 II-4 성과목표의 전반적인 자료제공이 필요하여, “주요 통계별 이용건수 및 목표” 자료를 추가함
 - “국가기본통계 이용건수”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추세치와 전년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또한 '08년도 목표치가 '07년도 낮은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동향통계 공표일자 준수율” 지표와 “통계조사결과 공표시기 준수율”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공표일자의 강력한 준수 의지 표명’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준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4-정책②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4-정책③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통계작성에 모집단 이용건수”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추세치와 전년실적을 반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통계수치 및 매년간공통계 부분을 추가하여야 함에 따라,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음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 환경개선① 	유지 수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 환경개선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사례품 만족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응답자 만족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의 내실화② 	유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응답자 만족도②-㉠ 		①-㉡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통계 작성·제공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통계 작성·제공②

II. 통계청 성과관리 분석 및 개선

· 서비스업통계 이용건수(만건)③-㉠	유지	· 서비스업통계 이용건수(만건)②-㉠
· 서비스업통계 응답률③-㉡	유지	· 서비스업통계 응답률②-㉡
· 서비스업통계 품질만족도③-㉢	유지	· 서비스업통계 품질만족도②-㉢
▪ 산업통계 작성·제공④	유지	▪ 산업통계 작성·제공③
· 산업통계 이용건수④-㉠	유지	· 산업통계 이용건수(만건)③-㉠
· 산업통계 응답률④-㉡	유지	· 산업통계 응답률③-㉡
· 산업통계 품질만족도④-㉢	유지	· 산업통계 품질만족도③-㉢
▪ 경제통계 작성기반 조성⑤	유지	▪ 경제통계 작성기반 조성④
· 경제통계 이용건수(만건)⑤-㉠	유지	· 경제통계 이용건수(만건)④-㉠
· 경제통계 응답률⑤-㉡	유지	· 경제통계 응답률④-㉡
· 경제통계 품질만족도⑤-㉢	유지	· 경제통계 품질만족도④-㉢
▪ 사회고용통계 작성·제공⑥	유지	▪ 사회고용통계 작성·제공⑤
· 사회고용통계 이용건수(만건)⑥-㉠	유지	· 사회고용통계 이용건수(만건)⑤-㉠
· 사회고용통계 응답률⑥-㉡	유지	· 사회고용통계 응답률⑤-㉡
· 사회고용통계 품질만족도⑥-㉢	유지	· 사회고용통계 품질만족도⑤-㉢
▪ 농림어업통계 작성·제공⑦	유지	▪ 농림어업통계 작성·제공⑥
· 농림어업통계 이용건수(만건)⑦-㉠	유지	· 농림어업통계 이용건수(만건)⑥-㉠
· 농림어업통계 응답률⑦-㉡	유지	· 농림어업통계 응답률⑥-㉡
· 농림어업통계 품질만족도⑦-㉢	유지	· 농림어업통계 품질만족도⑥-㉢

- 재정성과Ⅱ-4-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지표 수정 및 신설하였음
 - “통계조사사례품 만족도” 지표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과 인과관계가 낮으며,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달성 정도를 보여주는 통계조사환경의 개선정도를 보여주는 통계조사 응답률 등 결과지표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기본통계 응답률”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목표치 산출근거를 수정하여 제시함. 또한,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07년도의 실적과 ‘08년도의 목표치가 같은 바,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음
 - 재정성과Ⅱ-4-재정②-①의 “국가기본통계응답자 만족도” 지표를 통합함
- 재정성과Ⅱ-4-재정②의 성과목표는 재정성과Ⅱ-4-재정①과 통합이 가능하여 삭제함
 - “국가기본통계응답자 만족도” 지표를 재정성과Ⅱ-4-재정①에 통합함
- 재정성과Ⅱ-4-재정③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 “서비스업통계 이용건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수정으로 인하여 ‘08년도 목표치가 ‘07년도 보다 낮은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이 외의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추세치와 전년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서비스업통계 응답률” 지표에서 ‘08년도 목표치와 ‘07년도 목표치가 같은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재정성과Ⅱ-4-재정④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 각 성과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추세치와 전년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산업통계 이용건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kosis 검색기능 간편화로 조회건수 대폭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07년도 50% 수준을 '08년 목표치로 수정하였음

- 재정성과Ⅱ-4-재정⑤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 “경제통계 이용건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kosis 검색기능 간편화로 조회건수 대폭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07년도 50% 수준을 '08년 목표치로 수정하였음
- 재정성과Ⅱ-4-재정⑥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 “사회고용통계 이용건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kosis 검색기능 간편화로 조회건수 대폭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07년도 50% 수준을 '08년 목표치로 수정하였음
 - “사회고용통계 응답률”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상향추세를 하향으로 설정하여 목표가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과거 실적을 반영하되 사회통계조사(연 2회 실시)의 조사규모 확대, 신규 표본 사용에 따른 응답률 감소예정으로 목표는 3년 평균으로 조정됨에 따라 '07년도 보다 낮게 '08년 목표치를 조정하였음
- 재정성과Ⅱ-4-재정⑦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 “농림어업통계 이용건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kosis 검색기능 간편화로 조회건수 대폭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07년도 50% 수준을 '08년 목표치로 수정하였음

- “농림어업통계 응답률”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2008년부터 새로운 표본으로 조사하므로 불응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 전년과 같은 목표를 설정됨에 따라 ‘07년과 같게 ‘08년 목표치를 조정하였음
- “농림어업통계 품질만족도”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목표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신규도입 지표이므로 점차 목표치 상향조정’으로 대체하였음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대책부분 보강의 필요성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책 및 조정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5) 성과목표 II-5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조사환경에 적절한 조사방식의 활용으로 응답부담을 경감시킨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개선 전후 변함이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도 변화가 없으나 주요내용에서는 내용을 수정하였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작성에 행정자료 신규활용 건수 - 전년도 실적을 반영	유지	○ 통계작성에 행정자료 신규활용 건수 - 전년도 실적을 반영
○ 전자조사기법 활용 통계 수 - 추세치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	유지	○ 전자조사기법 활용 통계 수 - 신규 개발 적용 추세치를 반영

- “전자조사기법 활용 통계 수” 성과지표에서는 목표치 산출근거를 ‘추세치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이라고 제시한 바, 이를 ‘신규 개발 적용 추세치를 반영’이라고 산출근거를 수정하였음

(1) 관리과제 II-5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에 행정자료 신규활용 건수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에 행정자료 신규활용 건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신규공유 건수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자료 신규공유 건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조사방식의 활성화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조사방식의 활성화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조사방식 적용 통계 수②-㉠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조사기법 활용 통계 수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동향통계 CASI 조사율②-㉡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공업동태조사 CASI 조사율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동향통계 CASI 조사대상처 수②-㉢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쇼핑몰통계 CASI 조사율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통계 CASI 조사대상처 수②-㉣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조사 전자가계부 이용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통계 CASI 조사대상처 수②-㉤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통계 CASI 조사율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의 기준조정③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기준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목적에 적절한 표본 활용④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목적에 적절한 표본 활용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표본 적용 통계 수④-㉠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통계 표본설계 통계 수③-㉠

- 주요정책과제Ⅱ-5-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 각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함’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5-정책②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CASI 조사율로 일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전 지표를 수정하였음
 - “전자조사방식 적용 통계 수” 지표는 “전자조사기법 활용 통계 수”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07년 상반기 점검결과 10종이 추진되었으므로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목표치 산출근거와 목표치를 수정하였음
 - “산업동향통계 CASI 조사율” 지표는 “광공업동태조사 CASI 조사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지수개편으로 대상 사업체 중 36%가 교체됨에 따라 대폭 확대가 어려워 ‘07년 실적에 비해 ‘08년 목표치가 높지 않음
 - “서비스동향통계 CASI 조사대상처 수” 지표는 “사이버쇼핑몰통계 CASI 조사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목표치는 전수조사에서 ‘08년에는 표본조사 체계로 전환(4,500개→1,000개)됨에 따라 목표치를 하향 설정(CASI 조사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체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하였음
 - “사회복지통계 CASI 조사대상처 수” 지표는 “가계조사 전자가계부 이용률”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07년말 현재 실적(2,728/7,200가구)실적 감안하고,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치를 ‘08년도 목표(2,900/7,200가구)로 설정함
 - “고용통계 CASI 조사대상처 수” 지표는 “전고용통계 CASI 조사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 지표는 시행초기로서 CASI조사에 적합한 가구에 한해 보급함에 따라 목표치를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5-정책③의 성과목표는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과 동일한 지표 및 목표치로 관리과제 및 지표 삭제의 필요에 따라 삭제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Ⅱ-5-정책④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CASI 조사율로 일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전 지표를 수정하였음
 - “단일표본 적용 통계 수” 지표를 “지역통계 표본설계 통계 수”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지역통계 개발 표본설계는 지자체에서 개발하고자 신청한 통계에 대하여 지원하고, 2007년 실적은 예상치 못한 경남도내 각 10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고용통계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2008년에는 평년의 12종에 도전목표 3종을 추가하여 15종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②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대책부분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였음

제 3 절 관리과제 III

1. 전략목표 III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 분	전략목표
개선 전	통계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여 통계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개선 후	

- 전략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전략목표의 주요내용에서도 수정사항이 없음

<표 2-4> 전략목표Ⅲ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후	비고	전	후	비고
Ⅲ-1 국가통계포털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통계를 편리하게 활용토록 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4	4	0
	정보화	1	1	0	2	2	0
Ⅲ-2 통계정보 확충과 서비스체계 개선으로 통계정보의 이용을 활성화 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6	6	0
	재정성과	1	1	0	2	3	+1
	정보화	1	1	0	1	2	+1
Ⅲ-3 지리정보(GIS)를 이용한 통계정보 제공을 활성화 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5	5	0
	재정성과	1	1	0	1	1	0
	정보화	2	3	+1	2	3	+1
Ⅲ-4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통계를 서비스한다.	주요정책 과제	1	1	0	3	4	+1
	정보화	3	3	0	7	7	0
계		16	17	+1	33	37	+4

1) 성과목표 III-1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국가통계포털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통계를 편리하게 활용토록 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함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국가포털 이용건수 - 전년도 실적(7월 서비스시작)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수정	○ 통계포털 이용건수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 통계포털이용자 만족도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 통계포털이용자 만족도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 “국가포털 이용건수” 지표를 “통계포털 이용건수” 지표수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08년도 목표치와 함께 목표치 및 산출근거를 약간 수정하였음

(1) 관리과제 III-1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국가통계포털서비스 체계의 정착①	유지	▪ 국가통계포털서비스 체계의 정착①
· 통계포털 이용 건수(만건)①-㉠	유지	· 통계포털 이용 건수(만건)①-㉠
· 통계포털 이용자 만족도①-㉡	유지	· 통계포털 이용자 만족도①-㉡
▪ e-나라지표의 활용도 제고②	유지	▪ e-나라지표의 활용도 제고②
· e-나라지표의 이용건수(만건)②-㉠	수정	· e-나라지표 정책자료 확충률(%)②-㉠
· e-나라지표 이용자 만족도②-㉡	유지	· e-나라지표 이용자 만족도②-㉡

- 주요정책과제III-1-정책①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통계포털 이용 건수” 지표에서 ‘07년 점검결과 이용건수가 100만 건인 관계로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목표치 산출근거와 목표치를 수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III-1-정책②의 성과목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나, 성과지표에서는 수정하였음
 - 내실화 향상정도를 보여주는 비율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e-나라지표의 이용건수” 지표를 “e-나라지표 정책자료 확충률”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목표치 산출근거와 목표치를 수정하였음
 -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10%를 향상시켜 의욕적 설정목표가 되도록 하였음

② 정보화 부문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 통합DB의 구축 (행정정보DB 정보화기금)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 통합DB의 구축 (행정정보DB 정보화기금)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DB 신규 구축 기관수①-㉓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DB 신규 구축 기관수①-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합통계 신규 서비스 기관수 ①-㉔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통합 구축 협력기관 만족도 ①-㉔

- 정보화과제Ⅲ-1-정보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모두 과정지표의 성격이 강하므로 결과지표로 전환이 필요하여 수정하였음
 - 성과목표에서 '08년도의 목표치가 58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수정된 바, 이는 행정정보 DB 정보화기금으로써 '08년도 예산은 추정치임
 - “국가통합통계 신규 서비스 기관수” 지표는 “국가통계통합 구축 협력기관 만족도”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목표치를 수정하였음

②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대책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의 필요성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2) 성과목표 III-2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통계정보 확충과 서비스체계 개선으로 통계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수정 사항이 없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DB 자료 수록량(백 만 계열) - 추세치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 통계DB 자료 수록량(백 만 계열) - 당해연도 통계청 신규 수록대상 자료 기준으로 설정
○ 통계정보이용자 종합만족도 -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 통계정보이용자 종합만족도 - 2년간 평균증가율('05~'06년 0.9%, '06~'07년 0.6%) 0.75% 보다 0.2% 포인트 높은 0.95% 증가한 목표치 설정

- “통계DB 자료 수록량” 지표에서 목표치 산출근거를 ‘추세치 및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음
- “통계정보이용자 종합만족도” 지표에서 목표치 산출근거를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음

(1) 관리과제 III-2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정보의 확충①	유지	▪ 통계정보의 확충①
· 통계DB 수록자료량①-㉠	유지	· 통계DB 수록자료량①-㉠
· 통계정보이용자 종합만족도①-㉡	유지	· 통계정보이용자 종합만족도①-㉡
· 국제통계 DB 신규 테이블 수①-㉢	유지	· 국제통계 DB 신규 테이블 수①-㉢
▪ 통계서비스 방법의 다양화②	유지	▪ 통계서비스 방법의 다양화②
· 통계메타 DB 이용 건수②-㉠	유지	· 통계메타 DB 이용 건수②-㉠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건수②-㉡	유지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건수②-㉡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소요일수 ②-㉢	유지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소요일수 ②-㉢

- 주요정책과제III-2-정책①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음
 - “통계DB 수록자료량” 지표에서 목표치 산출근거를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음
 - “국제통계 DB 신규 테이블 수” 지표에서 ‘07년 실적과 ‘08년 목표치가 동일한 바, 이는 국제통계 자료는 한정되어 있어 신규 테이블 수록의 무한정 수록은 곤란하여 최근 3년간 최대 수록량에 맞추어 목표치 설정한 바, 이에 따른 설명을 제시함
- 주요정책과제III-2-정책②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음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건수” 지표에서 ‘08년 목표치의 변동이 있는 바, 이는 새로운 통계상품 개발(인구주택총조사, 1%, 2%, 5%)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활성화로 2007년(1,600→1,850) 실적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08년 목표치를 2,000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소요일수” 지표에서 2006년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단축 일수가 0.7을 정점으로 향후 급격한 제공기일 단축이 어려움에 따라 목표치 산출근거에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였음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자료의 발간·관리①	유지	▪ 통계자료의 발간·관리①
· 온라인 간행물 전환 건수①-③	유지	· 온라인 간행물 전환 건수①-③
· 종합간행물 이용자 만족도①-③	신설	· 온라인 간행물 이용 건수①-③
· 종합간행물 이용자 만족도①-③	유지	· 종합간행물 이용자 만족도①-③

- 재정성과Ⅲ-3-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에서는 제시된 지표 외에 이용자수 증가율 등 활용정도를 보여주는 결과지표의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지표를 신설하였음
- “종합간행물 이용자 만족도” 지표에서 목표치 산출근거를 ‘과거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2년간 평균증가율(‘05~‘06년 0.0%, ‘06~‘07년 1.2%) 0.6% 보다 0.3% 포인트 높은 0.9%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내용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③ 정보화 부문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 (일반회계) 	⇒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 (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단계①-㉓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단계①-㉓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DW 기반의 마이크로데이터시범 서비스 실시①-㉔

- 정보화과제Ⅲ-1-정보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에서 지표를 신설하였음
 - 지표가 과정중심으로 되어 있어 결과지표로 전환이 필요하며, '08년도 목표치에 대한 기술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구체화 과정이 요구됨에 따라 "DW 기반의 마이크로데이터시범 서비스 실시" 지표를 신설하였음

④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의 추가와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3) 성과목표 III-3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지리정보(GIS)를 이용한 통계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 사항이 없으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는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네비게이터 서비스대상 광역자치단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대상 광역자치단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지리정보 서비스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 말,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의 특/광역시 확대로 인구의 52.9%(22백만 명)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08년 이용건수 증가 예상

- “통계네비게이터 서비스대상 광역자치단체 수” 지표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대상 광역자치단체수” 지표로 수정함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건수” 지표에서 목표치 산출근거를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07년 말,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의 특/광역시 확대로 인구의 52.9%(22백만 명)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08년 이용건수 증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적 및 목표치도 함께 수정하였음

(1) 관리과제 III-3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내비게이터 서비스의 활성화①	수정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건수①-①	유지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건수①-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①-②	수정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5점 척도)①-②
▪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기반확충②	수정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②
· 센서스지도 갱신율②-①	수정	· 센서스지도 DB 갱신율②-①
· 센서스지도 이용자 만족도②-②	유지	· 센서스지도 이용자 만족도②-②
· 거처/사업장 위치정보 DB 구축율 ②-③	수정	· 개별정보(Point) DB 구축율②-③

- 주요정책과제III-3-정책①의 성과목표인 “통계내비게이터 서비스의 활성화” 목표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 목표로 수정하였으며, 성과지표도 수정하였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건수” 지표에서는 ‘07년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건수가 90만 건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의 특/광역시 확대로 인구의 52.9%(22백만 명)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이용건수 증가 예상으로 인하여 ‘08년도 목표치를 150만 건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지표에서 목표치 산출근거를 ‘전년도 실적 및 추세치 반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

지 않아, 이용자 중심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 개발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된다는 내용의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 주요정책과제Ⅲ-3-정책②의 성과목표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기반확충” 목표에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 목표로 목표명을 수정함
 - “센서스지도 갱신율” 지표를 “센서스지도 DB 갱신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적 및 목표치의 수정과 함께 전국을 5대 권역(충청, 전라, 경상, 강원, 수도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전국적으로 갱신이 완료(’07년 충청, 전라, 경상권)됨에 따라 목표치 산출근거를 수정하였음
 - “센서스지도 이용자 만족도” 지표에서 목표치 산출근거를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목표치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수정하였음
 - “거처/사업장 위치정보 DB 구축율” 지표를 “개별정보(Point) DB 구축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적 및 목표치의 수정과 함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국 서비스 실시 일정에 맞추어 100% 구축됨에 따라 목표치 산출근거를 수정하였음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구 관리(일반회계)① 	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구 관리(일반회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구 이용율①-㉠ 	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단위구 경계갱신율①-㉠

- 재정성과Ⅲ-3-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기초단위구 이용율” 지표보다는 기초단위구 경계수정율, 집계구 갱신율 등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제공 통계의 정확성 향상정도를 보여주는 결과지표가 필요함에 따라 지표를 수정함

- “기초단위구 이용율” 지표를 “기초단위구 경제갱신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적 및 목표치 수정과 함께 목표치 산출근거를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목표치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수정하였음

③ 정보화 부문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GIS 시스템 구축운영(일반회계)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실시 광역 자치단체 수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방식 조사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조사구 관리시스템 구축 시군구 수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조사구 관리시스템 적용 지자체 수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통계서비스 인프라 구축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통계서비스 인프라 구축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Point 구축 광역자치단체 수②-㉠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구축 광역지방자치 단체 수 ③-㉠

- 정보화과제Ⅲ-1-정보①의 성과목표는 “통계GIS 시스템 구축·운영” 목표에서 “통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목표로 수정하였으며, 성과지표는 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결과지표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지표를 수정 및 신설하였음
 - “웹조사구 관리시스템 구축 시군구 수” 지표는 “웹조사구 관리시스템 적용 지자체 수”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표치 산출근거를 보충하여 제시하였음
- 정보화과제Ⅲ-1-정보②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실적 및 목표치는 수정하였음
 - “사업장 Point 구축 광역자치단체 수” 지표는 “인프라 구축 광역지방자

치 단체 수”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표치 산출근거를 보충하여 제시하였음

④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의 추가와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4) 성과목표 III-4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통계를 서비스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 성숙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4단계 목표로 2단계 완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 성숙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4단계 목표로 2단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기반 통계조사시스템 신규 전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완료를 목표(43종)로 전년도 실적 반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기반 통계조사시스템 신규 전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완료를 목표(43종)로 전년도 실적 반영

- “EA 성숙도 수준”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단계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추가하였음

(1) 관리과제 III-4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정보화 인프라의 강화①	유지	▪ 정보화 인프라의 강화①
· 전산장비 이용자 만족도①-㉠	유지	· 전산장비 이용자 만족도①-㉠
· 1인당정보화교육이수시간①-㉡	유지	· 1인당정보화교육이수시간①-㉡
	신설	· 정보화 교육 활용도①-㉢
· 정보보안 관리수준①-㉣	유지	· 정보보안 관리수준①-㉣

- 주요정책과제III-4-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에서는 교육만족도나 교육활용도 같은 결과지표가 필요함에 따라 지표를 신설하였음
- 각각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추세치 및 전년실적을 반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음

② 정보화 부문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일반회계)	유지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일반회계)
· EA 성숙도 수준(단계)①-㉓	유지	· EA 성숙도 수준(단계)①-㉓
· EA 프레임워크 필수 산출물 구축 수①-㉔	유지	· EA 프레임워크 필수 산출물 구축 수①-㉔
▪ 통계작성시스템의 구축·확대(일반회계)	유지	▪ 통계작성시스템의 구축·확대(일반회계)
· 웹기반 통계조사시스템 신규 전환 수②-㉓	유지	· 웹기반 통계조사시스템 신규 전환 건수②-㉓
· 사업체통계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만족도②-㉔	유지	· 사업체통계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만족도②-㉔
· 시스템 개발 건수②-㉕	유지	· 시스템 개발 건수②-㉕
▪ 지식행정포털시스템 확대(일반회계)	유지	▪ 지식행정포털시스템 확대(일반회계)
· 지식행정지원포털 이용자 만족도 ③-㉓	유지	· 지식행정지원포털 이용자 만족도 ③-㉓
· 업무시스템의 포털시스템 연계율 ③-㉔	수정	· 업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목표 달성율 ③-㉔

- 정보화과제Ⅲ-1-정보①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EA 성숙도 수준” 지표에서 단계별 계획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목표치 산출근거에 단계별 설명을 제시하였음
 - “EA 프레임워크 필수 산출물 구축 수” 지표에서 연도별 계획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목표치 산출근거에 연도별 설명을 제시하였음
- 정보화과제Ⅲ-1-정보②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각각의 지표에서 목표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충하였음
- 정보화과제Ⅲ-1-정보③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

하였음

- “업무시스템의 포털시스템 연계율” 지표는 “업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목표 달성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목표치 산출근거를 보충하여 제시하였음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대책부분 보강의 필요성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책 및 조정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제 4 절 관리과제 IV

1. 전략목표 IV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 분	전략목표
개선 전	통계역량을 강화하여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개선 후	

- 전략목표는 수정 사항이 없으며, 전략목표의 주요내용에서도 수정 사항이 없음

<표 2-5> 전략목표Ⅳ : 성과목표 및 과제·지표체계 개선 전후 비교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후	비고	전	후	비고
IV-1 성과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사	3	3	0	6	6	0
IV-2 전략지향적 조직 관리로 임무와 비전을 달성한다.	조직	2	2	0	2	3	+1
IV-3 국가통계발전을 선도할 통계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4	4	0
	재정성과	1	1	0	3	4	+1
IV-4 통계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통계를 작성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5	5	0
	재정성과	1	1	0	3	3	0
IV-5 통계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통계인식을 높인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3	3	0
	재정성과	1	1	0	1	1	0
계		14	14	0	27	29	+2

1) 성과목표 IV-1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 분	성과목표
개선 전	성과중심의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수정 사항이 없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제도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제도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제도 보완을 통해 목표치 상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목표치 상향 설정

- 성과지표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1) 관리과제 IV-1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인사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①	유지	▪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①
· 인사제도 만족도①-①	유지	· 인사제도 만족도①-①
· 1인당 상시학습시간①-②	수정	· 상시학습제도 운영만족도①-②
▪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②	유지	▪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②
· 인사참여율②-①	유지	· 인사참여율②-①
▪ BSC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③	유지	▪ BSC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③
· 성과관리시스템 수용도③-①	유지	· 성과관리제도 수용도③-①
· 성과관리시스템 활용도③-②	유지	· 성과관리시스템 활용도③-②
· 주요성과지표(KPI) 개선 수③-③	유지	· 주요성과지표(KPI) 개선 수③-③

- 주요정책과제IV-1-인사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음
 - “인사제도 만족도”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
 - “1인당 상시학습시간” 지표는 자체평가 인사부문 평가지표(공통지표)와 중복되므로 “상시학습제도 운영만족도” 지표로 수정함. 이에 따라 목표치 및 목표치 근거자료를 수정함

- 주요정책과제Ⅳ-1-인사②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음
 - “인사참여율”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과거실적을 반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추가
- 주요정책과제Ⅳ-1-인사③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음
 - 각각의 지표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타기관 수준 반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고 세부지시가 필요함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2) 성과목표 IV-2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전략지향적 조직관리로 임무와 비전을 달성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에서도 수정 사항이 없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자체조직관리과제 추진율 - 정부업무평가 최고점수(90%) 적용	유지	○ 자체조직관리과제 추진율 - 정부업무평가 최고점수(90%) 적용

- 수정사항 없음

(1) 관리과제 IV-2

① 조직부문

조직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조직관리과제 추진율①-a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조직관리과제 추진율①-a

	신설	· 총액인건비 의도적 예산절감(억원)①-㉞
▪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②	유지	▪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②
· 과장급 위임전결 비율②-㉠	유지	· 과장급 위임전결 비율②-㉠

- 주요정책과제Ⅳ-2-조직①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지표를 신설하였음
 - “자체조직관리과제 추진율”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는 목표지를 ‘06년 이후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는 보수적 목표 설정으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08년의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목표치가 최고이거나 현행을 유지하기도 힘든 목표인 관계로 목표치 산출근거에 자세한 설명을 첨부함
- 주요정책과제Ⅱ-2-조직②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음
 - “과장급 위임전결 비율” 지표는 목표설정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하므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②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실적을 언급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내용의 추가와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3) 성과목표 IV-3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국가통계발전을 선도할 통계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는 수정 사항이 없으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는 수정하였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전문교육 이수자수 - 과거 실적 및 추세치 반영	수정
○ 통계전문교육 만족도 - 4.02점을 유지	유지
	○ 통계전문교육 과정 운영률 - 계획대비 과정 운영률을 '06년 실적을 반영하여 설정
	○ 통계전문교육 만족도 - 4.02점을 유지

-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단계” 지표는 '08년 실적 및 목표치를 ‘현장적용점검’이 아닌 ‘시험 조사를 통한 추진방안마련’으로 자세하게 목표를 수정하였음

(1) 관리과제 IV-3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전문교육의 활성화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전문교육의 활성화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전문교육 이수자 수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전문교육 과정 운영률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전문교육 만족도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전문교육 만족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교육체계의 개선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교육체계의 개선정책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순회과정 운영 횟수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순회과정 운영 횟수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과정 개설 건수②-㉡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과정 개설 건수②-㉡

- 주요정책과제Ⅳ-3-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성과지표①-㉠을 수정하였음
 - 예시분기별 수요조사 실시 대상 기관수 또는 수요조사 실시후 반영건수 등의 지표가 추가가 요구됨에 따라 “통계전문교육 이수자 수” 지표를 “통계전문교육 과정 운영률”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적 및 목표치 및 목표치 산출근거를 수정하였음
 - “통계전문교육 만족도”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전년도 실적을 유지’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설명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 주요정책과제Ⅳ-3-정책②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수시·순회과정 운영 횟수”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전년도 실적을 반영’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설명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 “사이버과정 개설 건수” 지표는 제공하는 내용이나 제공 수에 대한 고려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교육의 확대①	유지	▪ 통계교육의 확대①
· 교재표준화 건수①-㉠	유지	· 교재표준화 건수①-㉠
· 사이버과정 이수자수①-㉢	수정	· 사이버과정 이수율①-㉢
	신설	· 통계교육원 전체 교육이수자수 ①-㉡
· 교육이수자 업무연계도①-㉣	수정	· 교육이수자 업무활용도①-㉣
	신설	· 통계전문교육 만족도①-㉤

- 재정성과IV-3-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통계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과정, 기법, 시설, 행정 등에 대한 만족도, 교육인원 달성률 등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계교육의 효과정도를 보여주는 결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함에 따라 지표를 수정 및 신설하였음
 - “교재표준화 건수” 지표는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이는 근거로서 설명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 “사이버과정 이수자수” 지표는 통계교육과정에 대한 지표와 교육인원 달성률과 같은 전체 통계교육과 연관된 지표가 필요함에 따라 “사이버과정 이수율” 지표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목표치 산출근거를 수정하였음
 - 통계교육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함에 따라 “통계전문교육 만족도” 지표와 “통계교육원 전체 교육이수자수” 지표를 신설함

4) 성과목표 IV-4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통계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통계를 작성 한다.
개선 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연구원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 - 전년도 실적 반영	유지	○ 연구원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 - 연구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실적 반영
○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 수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 수 - 외부의견 청취 강화를 위해 목표상향 설정

-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 수”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근거로서 설명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1) 관리과제 IV-4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실용성 높은 통계연구 수행①	유지	▪ 실용성 높은 통계연구의 수행①
· 연구원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 ①-a	유지	· 연구원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 ①-a
· 연구과제 평가점수①-b	유지	· 연구과제 평가점수①-b
▪ 통계연구의 기반구축②	유지	▪ 통계연구의 기반구축②
· 연구개발협의체 운영 수②-a	유지	· 연구개발협의체 운영 수②-a
· 전문연구결과물 산출②-b	유지	· 전문연구결과물 산출②-b
·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횟수②-c	유지	·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횟수②-c

- 주요정책과제IV-4-정책①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연구과제 평가점수” 지표는 평가점수 목표치에 대한 근거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설명을 추가함
- 주요정책과제IV-4-정책②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 “연구개발협의체 운영 수” 지표는 각 실별 2회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설명을 추가함
 - “전문연구결과물 산출” 지표에서 결과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이해를 도움
 -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횟수” 지표는 연구운영 계획과의 연계성을 구체

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기준(예: 월, 년, 주)을 제시하여 보충설명함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기법 개발과 국제공동연구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기법 개발과 국제공동연구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 건수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공동연구 건수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결과이용자 만족도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결과이용자 만족도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컨설팅 건수①-㉤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수탁 통계작성 지원건수①-㉤

- 재정성과IV-4-재정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성과지표는 국제공동연구건수, 통계컨설팅 건수 보다는 통계기법개발 건수 등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양적, 질적, 통계기법개발성과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를 필요로 함에 따라 지표를 수정 및 신설하였음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대책부분 보강의 필요성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책 및 조정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음

5) 성과목표 IV-5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구분	성과목표
개선 전	통계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통계인식을 높인다.
개선 후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수정사항이 없음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세치 전년도 실적을 반영 및 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목표설정

- “통계청 인지도” 지표의 목표치 산출근거에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설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 근거로서 설명이 부족하여 자세한 설명을 추가함

(1) 관리과제 IV-5

① 주요정책과제 부문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 통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①	유지	▪ 통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①
· 통계청 인지도①-㉠	유지	· 통계청 인지도①-㉠
· 통계활용사례 발굴홍보건수①-㉡	유지	· 통계활용사례 발굴홍보건수①-㉡
▪ 고객맞춤 홍보②	유지	▪ 고객맞춤 홍보②
· 정책고객확보 수(천명)②-㉠	수정	· e-mail 개봉률(%)②-㉠

- 주요정책과제IV-5-정책①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성과지표도 수정사항이 없음
- 주요정책과제II-5-정책②의 성과목표는 수정사항이 없으나 관리과제가 고객별 맞춤홍보이나 성과지표는 정책고객 확보수로 함에 따라 대표성이 떨어짐. 이에 정책고객별 맞춤홍보 건수 등 지표의 추가가 필요함에 따라 “정책고객확보 수”지표를 “e-mail 개봉률” 지표로 수정함

② 재정성과 부문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의 명성관리(일반회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홍보(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홍보효과 측정지수①-a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홍보효과 측정지수①-a

- 재정성과Ⅳ-4-재정①의 성과목표는 “통계청의 명성관리” 목표를 “통계 홍보” 목표로 수정하였음

③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에서는 대책부분 보강의 필요성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책 및 조정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PCRM 관리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였음

Ⅲ. 해외사례

SAPA 서울행정학회

III. 해외사례⁴⁾

제 1 절 미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 평가제도의 개관

1)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1) 도입 배경

- 미국 의회는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에 합당한 정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였고 연방정부 및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음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을 제정함으로써 미국의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제도를 정착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GPRA 제정의 의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혁의 입법적 기반 제공, 연방기관들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성취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성과 관련 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여 근본적 변화를 정착시키는 것임(GAO. 2004a)

4) 이윤식 외(2006),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를 재정리

- GPRA의 시행을 통해 미리 정한 프로그램의 목표 및 실제 성과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한층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2) 평가제도의 목적

- GPRA는 연방기관들에게 사업결과의 성취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연방정부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목표설정·목표에 대한 성과 측정·목표 진행상황을 공포하는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성과의 개혁 추진, 새로운 초점을 결과, 서비스 및 고객 만족에 두고 연방사업의 효과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향상, 연방관리자들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결과 및 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개선, 의회의 의사결정 향상, 연방정부의 내부관리 개선을 목적으로 함

2)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1)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 연방정부의 평가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으나, GPRA 등 성과관리를 명시하고 있는 법에 근거하여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음
- GPRA와 더불어 1990년의 '최고재무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과 그 후 확장된 1994년의 '정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 과 같은 여러 법안이 입안되었고, 이 법안들은 전략적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따른 결과 지향적 성과목표(performance goals), 목표달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성과 자료 등과 같이 다양한 성과관련 정보를 제시하여 줌

(2) 평가제도의 추진체계

- 연방정부는 OMB가 전체 연방정부 재무관리(평가)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 및 규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통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기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함
- OMB와 더불어 미국의 평가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행정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공무원의 성과관리를 통하여 연방정부의 성과를 개선하고 국회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게 됨. GAO 업무 내용의 80%는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s)이고, 20%는 재정적 감사(financial audits)로 구성됨

(3) 평가 대상 및 평가 방식

- 국가 안보기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GPRA의 적용 대상으로 전략계획과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1) 성과관리의 종류 및 방식

- 성과 지향적 관리제도는 의도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법으로 성과 지향 시스템(results-oriented system)은 미연방정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 연방정부의 성과에 중점을 둔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은 대통령 관리의제(PMA)를 통해 이루짐. 연방정부는 전 정부 차원의 다섯 가지 PMA를 제

시하고 각각의 사안에 분명한 목표와 성공기준을 제시하여 개별 기관들은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성취계획들을 개발하고 시행함

- GPRA는 연방사업의 관리를 인사나 업무 과정으로부터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관리개선을 꾀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제도의 중심법안임. GPRA의 주요 구성요소는 전략계획, 성과계획 및 사업성과보고서 임

<표 3-1> GPRA의 구성 체계

구성	주요특징
전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의 주요 기능과 활동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임무 규정 - 행정기관의 주요한 기능과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일반 적 목표 제시
성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이를 통하여 달성되는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목표 수립 - 성과계획상의 활동은 반드시 전략계획상의 목표 및 활동과 연계되어야 하며, 목표 달성에 소용되는 구체적인 활동 과정, 기술, 인적·물적 자원, 정보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설명 제시 -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OMB와 의회에 제출·공표
사업성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행정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성과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성과계획서에 마련된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각 성과지표별로 이미 제시된 성과목표에 대비한 성과 실적 자료를 담고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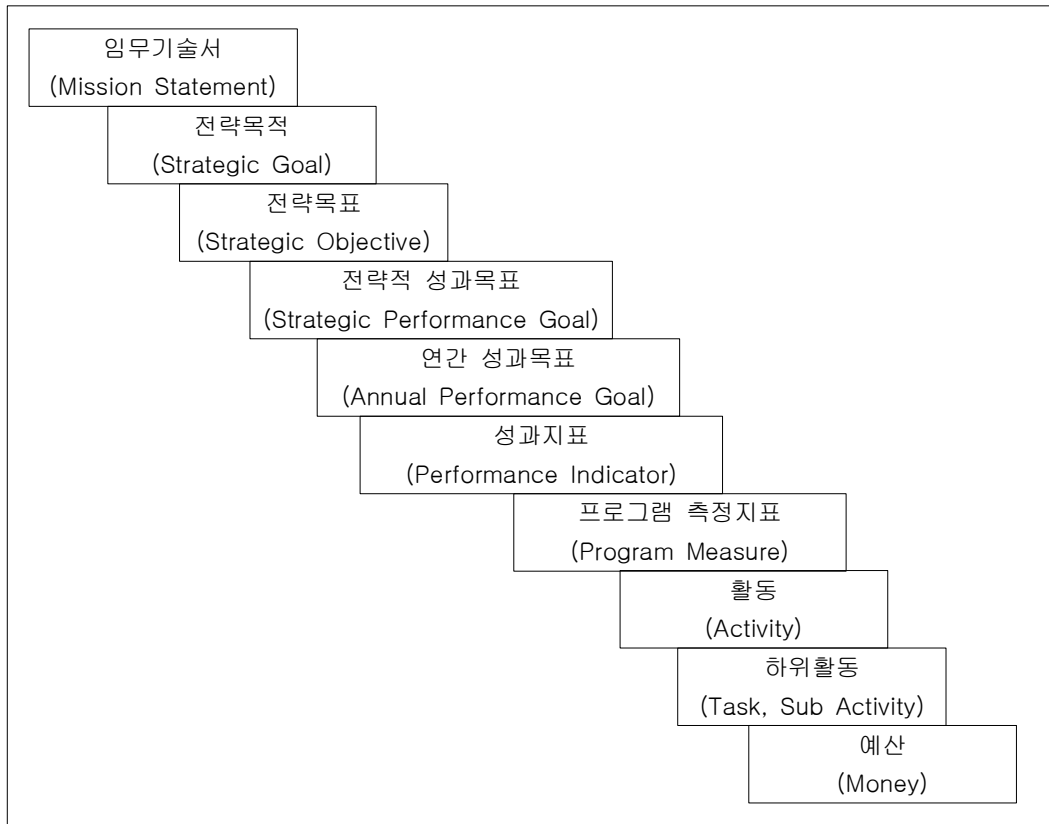
2) 성과관리의 운용

- GPRA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효과적인 성과측정 시스템의 개발로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성과측정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제1단계인 목표설정은 전략계획서 작성 및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연계되어 있고, 제2단계인 성과측정 수단의 개발은 주로 성과계획

서에 포함될 내용이며, 제3단계인 자료 수집은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에 모두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및 결과의 보고는 성과보고서가 담아야 할 주요 내용임

- 성과측정의 과정 중 성과측정 수단의 개발이 제일 어려운 과정으로 GPRA가 프로그램의 활동 결과 발생하는 산출(output)이 아닌 프로그램의 결과(result)를 측정하도록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화 할 수 있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관건이 됨
- 대통령 관리의제(PMA)가 성과 지향적 관리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사안 중 하나가 예산과 성과의 통합(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으로 성과측정 결과를 비용과 연계시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둠
- 통합성과관리의 단기적 이익은 행정부가 다음 해에 추구할 목표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고 장기적 이익은 실제 성취될 결과와 예측되는 결과의 비교 평가를 통하여 더 나은 성과를 획득하는 것임
- 직렬식 성과예산(Cascade Performance Budgeting: CPB)제도는 행정부처에 효과적인 성과예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 방법으로 기관의 장기목표를 일상적인 사업 활동과 명확히 연계시키며, 다양한 목표의 성취와 연관된 비용 및 각 활동 단위의 비용까지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성과가 투명하게 예산에 반영되게 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포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도구가 되는 예산구조를 연방정부와 각 부처에 제공함
- CPB는 부처와 관청의 전략적 계획이 조직화된 것처럼 예산회계 구조를 재조정하는 시스템 개발, 상호 연계된 성과예산을 통하여 어떻게 이 구조가 전 조직으로 흘러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회예산요구서 이용, 매일의 활동과 성과예산과의 연쇄성 연계,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드는 총 비용의 정확한 계산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활동의 전체 비용 공개와 같은 네 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

<그림 3-1> 직렬식 성과예산(CPB) 모형



3.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1) 부처별 자체평가조직

- 미국은 평가를 총괄하는 상위 평가기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GPRA를 비롯하여 성과관리 관련법들을 통하여 평가에 관한 OMB의 권한을 제도화 함
- OMB는 개별 부처의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담겨야 할 기본 내용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형식은 지정하지 않고 개별 부서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으로 개별부처는 창의적인 자체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994년 ‘최고재무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CFOA)을 확대한 ‘정부관리개혁법(Government Management Reform Act: GMRA)의 제정으로 부처별 보고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OMB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OMB는 성과와 비용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음. 즉 GPRA의 성과보고서와 CFOA의 회계보고서를 합친 성과책임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성과예산을 통하여 성과와 예산 및 성과와 비용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미국에서의 부처 평가는 OMB 지도하의 최고재무관실이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다부처사업의 경우도 OMB가 총괄적인 관리의 책임을 지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음

2) 평가지표 체계

(1) 연방정부의 평가지표 체계

- 1997년 5월 GAO는 기관의 전략적 계획에 대한 의회의 검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지침을 개발함. 이 지침은 연간 성과목표, 수단과 전략들, 타당성과 실증성 등과 같은 핵심 평가 기준들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음
- 연방정부의 평가총괄기관인 OMB는 PMA를 통하여 각 부처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이 성과 지향적이 되도록 유도하고, 연방정부는 바람직한 성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에 기초한 업무 추진 지침을 제시함
- PMA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용하는 5개의 의제와 지방기관에 적용하는 9개의 특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의제를 위하여 PMA는 명확하고 명백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목표와 표준을 세우고 각 기관들

은 실행 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발전시키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함.

- 예를 들어 각 기관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초록, 빨강, 노랑의 간단한 체점 제도를 발전시켜 분기마다 전제 목적의 부합 여부, 실천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함.

<표 3-2> 성과지표의 예

구분	현황 점수에 대한 설명	진척된 점수에 대한 설명
초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성공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다. - 기관은 모든 기준에서 중간 평가 수준을 충족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과 동의하여 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은 계속 진행된다. - 목표를 적시에 성취하기 위하여 실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성취하려는 질적 수준의 문제 등은 기관에 의하여 조정 된다
빨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심각한 많은 결점들 중의 하나 이상을 갖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한 상태로 중대한 관리·조정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노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적 기준은 일부 달성하고, 빨강에 해당하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2) 지방정부의 평가지표 체계

-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부서에서 평가 업무를 총괄하는데, 지방 정부에 대한 평가는 주로 지방정부 실무진 협의회인 국제자치단체경영협회(International County Management Association)가 중심이 되어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 특정 분야에서의 우수자치단체평가 및 공표, 일반보고서, 안내서 발간 등을 수행하고 있음

3) 평가 결과의 활용

- OECD는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 용도를 사업설계 및 추진 방안 합리화,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로 제시하고 있음

- 성과 기반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성과에 관한 정보와 예산을 연계 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성과예산은 지난 50년간 걸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도되었음. 성과예산은 성과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예산요구액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예산 배정에 관한 결정을 성과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계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MBO), 영기준예산(ZBB)을 모두 포함함
- GPRA는 과거의 성과예산제도가 진일보한 형태로 기본적으로 연간 성과계획서를 성과목표 및 예산 요구와 연계시킴으로써 제한적이지만 매우 유용한 형태의 성과예산이며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설정할 때는 의회와 협의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유리를 극복하고 있음
- 2003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OMB는 모든 성과 자료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4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는 체계적으로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도입함. PART는 사업이 납세자에게 가치가 있는 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이며 높은 수준의 성과정보를 위한 기준을 세우며, 공통 질문 및 예외 질문 등 30여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성과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배정에 관한 엄밀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목적이 있음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 지방정부의 평가 실시 법적 근거

- 주정부는 물론 하위 지방정부들에서도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GPRA에 의거 1999회계연도부터 모든 연방부처에 대한 성과관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고 주정부도 최근 수년간에 걸

쳐 성과관리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운영 실태

- 대부분의 주정부가 성과관리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전략계획의 작성 및 벤치마킹의 활용 여부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지방정부는 무려 9만 여개에 달하고 그 형태 또한 시, 카운티, 교육구 등 다양하여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그러나 정부회계표준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과측정이 지방정부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 2 절 캐나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 평가제도의 개관

1)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캐나다 연방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 ‘관리실무와 통제(management practice and control)’를 개선하고자 평가 제도를 도입함
- 1997년의 ‘평가정책(Evaluation Policy)’을 시작으로 2001년 ‘캐나다정부의 평가정책과 기준’ 승인에 이르기까지 평가제도 도입에 있어 다양한 시도를 하였음
-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평가는 각 부처가 지출계획, 통제 및 감독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재정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캐나다 정부는 2004년도 예산에서 평가 기능의 역량과 활동을 더욱 강화 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2) 평가제도의 근거 및 추진체계

- 캐나다 정부의 평가제도의 근거는 소위 ‘평가정책’과 같은 일련의 정책임
- ‘평가정책’은 관리자들이 정책, 사업에 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객관적이고 증거에 입각한 정보의 생산을 지원함

- 평가제도 추진 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재정위원회 사무처(TBS)임. 재정위원회는 캐나다 정부에서 일종의 총지배인 역할로 정부 운영의 재무, 인사 및 행정적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나 기관에서의 집행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책임을 짐

3) 평가 유형과 평가 방식

(1) 평가 유형

- 부처나 청의 평가부서에서 수행되는 평가에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두 가지 유형이 있음

(2) 평가 절차

- 사업 또는 정책의 평가는 과업지시서 작성, 기획보고서 수립, 자료 수집 도구 개발 및 수집, 평가자원 확보, 자문, 보고의 흐름을 따름

2.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1) 성과관리의 종류 및 방식

(1) '관리책무 기본틀'의 개념

- 관리책무 기본틀(MAF)은 캐나다 재정위원회 사무처(TBS)가 공표한 현대적인 공공 서비스 관리에 대한 기대를 요약하는 열 가지 선언을 말함

- MAF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바람직한 관리를 강화, 관리자, 부처 사무차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이 업무의 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 결과에 책무성을 강화, TBS의 관리 기본틀을 통합함으로써 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들 간의 연계를 명확히 함

- TBS는 일차적으로 부처의 사무차관에 초점을 두고 MAF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부처의 사무차관은 조직 성관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계층의 관리자들에게 MAF를 사용하도록 함

- MAF는 '캐나다 국민을 위한 결과'라는 방침에서 설정된 현대적인 공공 서비스 관리의 비전을 일련의 관리 기대치(management expectation)을 구체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성되고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관리에 초점을 둔 조치들과 그 조치들이 공유하는 비전을 반영하고 있음

- MAF의 핵심적인 속성은 그 단순성에 있음. 이 기본틀은 건전한 관리의 열 가지 필수적인 요소(기대치)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일련의 지표와 연관된 척도로 연결됨

<표 3-3> 기대치의 개념

<p>국정 운영과 전략적 방향</p> <p>내부적인 응집력, 조직의 기강, 결과에 대한 조율 등 필수적인 조건들이 효과적인 전략적 방향 장관과 의회에 대한 지원 및 결과의 전달을 제공하도록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p>	<p>공공 서비스 가치</p> <p>자신들의 행동을 통하여 부처의 지도자들은 결과를 캐나다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공 서비스 가치와 윤리의 중요성을 강화한다(예컨대, 민주적, 전문가적, 윤리적, 및 국민적 가치들)</p>			<p>결과와 성과</p> <p>결과관련 정보(내부, 서비스, 사업)가 부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수집·사용되고, 공식보고가 균형 있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수월하다.</p>
	<p>정책과 사업</p> <p>부처의 연구·분석 능력이 고품질의 정책대안, 사업설계 및 장관 자문을 확보하도록 개발되고 유지 된다</p>	<p>인적 자원</p> <p>부처는 인력과 근무환경, 역량 강화에 대한 강조, 부처의 성과와 캐나다 공공 서비스의 확신에 찬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지도력을 보유하고 있다.</p>	<p>국민 중심의 서비스</p> <p>서비스가 국민 중심적이며, 정책과 사업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개발되고, 협력 관계가 권장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된다.</p>	
	<p>위험관리</p> <p>간부진은 조직의 전략적인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배경과 실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p>	<p>청지기 역할</p> <p>부처의 통제 기제(자산, 자금, 인력, 서비스 등)가 통합되고 효과적이며, 근본 원칙이 모든 직원들에게 명확하다.</p>	<p>책무성</p> <p>결과에 대한 책무성이 명확히 할당되고, 자원과 일치되며, 권한 위임이 그 능력에 적절하다</p>	
	<p>학습, 혁신 및 변화관리</p> <p>부처는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관리하고, 조직의 학습을 증진시키고, 집합적인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성과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다.</p>			

<표 3-4> 지 표

<p>국정 운영과 전략적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 내각 및 의회에 대한 지원 - 전략적 결과와 연계된 관리 기본틀 - 올바른 집행부 - 결과 지향적 기관의 우선순위 - 전략적 자원배분/성과도대의 재배분 관리 수월성을 위한 통합적 의제 - 수평적 공조 - 환경의 탐색 	<p>공공 서비스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적 행동 - 부처의 현실/문화에 맞추어진 공공 서비스 가치 - 가치에 기반을 둔 관리 실무 			<p>결과와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서비스/내부결과에 대한 기관 모니터링 보고 - 기관의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통합적 재무/비재무적 성과정보 - 측정가능한 결과에 기초한 부처 보고 - 최상에 대한 벤치마킹 - 시민/의회와의 투명하고, 적시적이며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p>정책과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분석역량과 점검과 도전의 문화 - 범정부적 우선순위에 연계된 결과 지향적 정책/사업의제 - 시민참여 - 장관과 중앙의 확산 	<p>인적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의 반영 - 공용어 요건의 존중 - 갱신/지속된 역량 - 옹호적인 일터 - 직원 참여 - 성장의 기회 - 지도력의 연속성 - 인정, 보상 및 제재 	<p>국민 중심의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과 지속적 개선 - 기술적 대안의 충분한 탐색 - 일선신무자의 권한 강화 - 효과적인 관계 관리 	
	<p>위험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위험의 파악과 관리 - 의사결정에서 위험의 관리 - 위험에 대하여 영리한 문화 - 위험을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관리하는 능력 	<p>칭지기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결과, 통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조기 경고를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 - 활발한 감사/평가 기능 - 기능별 전문가들과의 협력 관계 - 정책, 규제, 법령의 준수 	<p>책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한 책무성과 정당절차와 결과에 대한 책임 - 능력에 맞는 권한 위임 	
	<p>학습, 혁신 및 변화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조직학습, 변화를 기대하고 적응하는 능력 및 변화에 대한 성향 - 혁신의 문화 - 변화의 지침으로서 성과 - 권한 강화의 도구로서 위임 - 전략적 자원으로 포착되고 관리되는 집합적 지식과 기억 			

<표 3-5> 척 도

국정 운영과 전략적 방향 -부처의 지원에 대한 장관의 신뢰 -정책 의제의 일관성에 대한 인식 -강력한 경영 관리팀 -우선순위의 설정, 재배분 및 범정부적 우선순위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관의 관리 기본틀 -인력 관리, 감사, 서비스 등을 통합하는 관리 개선 의제 -지도력/범공공서비스 조치에의 참여	공공 서비스 가치 -맞춤식 공공 서비스 가치 선언과 모든 직원과 정기적으로 토론되는 윤리지침 -건전한 자문과 청구 자치의 설치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학습 및 기타 도구 -공공 서비스 가치와 윤리의 측면의 조직 성과에 대한 직원 평가			결과와 성과 -부처 성과보고서 품질 -직원/고객 설문 결과 -재정/사업/결과/성과 측정 강화의 진전 -성과에 대한 조직의 모니터링과 검토 -위험기반의 평가계획과 후속평가 -외부 벤치마킹 대비 성과
	정책과 사업 -정책대안과 자문의 품질에 대한 장관의 신뢰 -정책공동체의 총원/개발/승계 계획 -정책역량/분석 도구에 대한 투자	인적 자원 -지도력, 총원, 인계, 학습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인력 자원개발 계획 -인력자원 목표를 향한 진전 -직원 참여의 측정/개선에서의 진전 -지도력의 품질 -노사관계의 품질	국민 중심의 서비스 -주요서비스/규제사업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변화 계획의 수립 -매년 측정되는 고객만족도 -다른 정부/협력자들과의 공조 -시민을 위한 정보	
	위험관리 -직원을 위한 도구/훈련/지원 -전략 계획에서 위험 고려의 증거 -위험평가와 의사소통에 외부 이해관계인 참여	청지기 역할 -정기적으로 검토되는 위험 기반의 감사계획과 후속 감사 -조직정보 시스템과 통제의 통합에서의 진보 -감사 결과와 통제 실패 -계약의 품질 확보, 재무/지식/자산 관리, IT관리	책무성 -책무성의 명확성 -권한위임의 정기적 점검 -집행위원회의 성과관리 감독과 성과의 정기적 검토 -기관 의무와 개인 의무의 조율	
	학습, 혁신 및 변화관리 -조직학습의 개선과 지식관리실무의 진보 -조직학습에 대한 투자 -조직의 적응 능력, 변화 및 혁신에 대한 이해관계인/직원의 인식 -조직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 성과측정			

- TBS는 MAF를 TBS와 부처의 사무차관의 의사소통 토대, 사무차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의 골격, 지출·관리심의의 관리에 대한 평가들을 짜는데 기반, TBS내 관리보고 및 정보관리를 통합하고 간소화, 부처관리의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의회보고를 개선하는데 사용함

(2) 의회보고 및 ‘사업활동설계서’

- 의회에 대한 결과보고는 연초에 부처와 기관의 ‘계획 및 우선 순위 보고서(Report on Plan and Priorities: RPP)’와 결과의 성취에 대하여 보고하는 ‘부처성과보고서(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 DPR)’를 통해 이루어 짐
- 성과보고서는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창출된 가치(Value for Money)’를 국민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정부 노력의 핵심적 도구이며, 정부 지출을 감독하고 공공 부문 관리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전달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주요 수단임.
- TBS의 2003~2004년도 DPR을 일례로 해서 부처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계획 및 우선 순위’는 세 가지 전략적 요소인 청지기 역할,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6> 전략기획 과정

전략기획과 결과 기본틀		
↑		
비전 혁신, 시민 서비스, 가치, 책임있는 지출 및 결과에 초점을 두는 관리에서의 우수성을 달성하는 것		
↑	↑	↑
청지기 역할 전략적 결과: 연방 자원의 건전한 공공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전략적 결과: 현대적·효과적이고 잘 관리되는 공공 서비스	서비스 개선 전략적 결과: 시민 중심의 서비스

○ TBS의 전략적 결과는 청지기 역할과 서비스 개선 임

<표 3-7> 재정위원회 사무처 성과보고 체계

전략적 결과	⇒	청지기직 연방정부 자원의 건전한 공공관리		
전략적 결과 구성 요소	⇒	우선 순위 연방자원이 정부 우선 순위와 연계됨	성과 연방자원이 신중함과 성실함으로 능률적·효과적으로 사용됨	책무성 공공 서비스를 통한 결과책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핵심 서약과 결과가 공개 보고됨
추구한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의 수요와 새로운 정부 우선 순위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건전한 재정, 비재정 성과정보에 기초한 자원의 배분과 재배분 - 재무위원회의 배분 결정을 반영하고 의회에 적시에 제출되는 부처의 지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위원회 정책과 지침이 정부 전체적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되고 시의적절한 범정부적 성과정보가 재무위원회 각료들, 의회의원들 및 부처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됨 - 정부의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적시적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의회에 제출됨
2003/2004 계획 및 우선 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인 자원배분과 지출관리의 개선 - 새로운 통합적 지출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범정부적인 자원배분과 지출관리 - 효과적인 자원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제공 - 효과적인 지출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 현대적 감독의 집행 - 범정부적 평가와 자체 감사 역량과 결과의 강화 - 갱신된 재무위원회관리정책을 통한 범정부적 청지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력, 방향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성과의 보고 - 부처기획과 성과 보고 - 발생주의예산과 배정의 사용 가능성 보고 - 의회와 국민에 대한 보고 개선

<표 3-8> 서비스 개선 성과보고 체계

전략적 결과	⇒	서비스 개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전달	
전략적 결과 구성 요소	⇒	<p style="text-align: center;">접근</p>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택하는 공용어로 모든 전달 경로에 걸쳐 정부 사업과 서비스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품질</p> 국민들은 혁신적인 조직을 통하여 적시에, 공손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부 서비스의 품질에 만족함
추구한 결과	⇒	-정부가 정보 기술과 인터넷의 모델 사용자가 됨으로써 2005년까지 캐나다가 그 국민에게 가장 많이 접속된 정부가 됨 -단일창구 서비스의 집행과 전화 서비스, 정부 커뮤니케이션, 정보 접근 및 사생활 보호 같은 영역에서의 사업과 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의 연방정부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 -국민들이 선택한 공용어로 제공되는 서비스 개선	-2005년까지 서비스 개선 조치들의 성공적인 집행과 증가된 조직효과성을 통하여 핵심적인 정부서비스의 전달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만족도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달성
2003/2004 계획 및 우선 순위	⇒	-다채널 서비스 전달 비전과 서비스 변화 전략의 개발 -2005년까지 온라인 정부 구축 -정부의 정보기술 자산의 건전한 관리 달성과 부처의 IT 사업과 투자와 범정부적 방향의 일치	-2005년까지 측정 가능한 서비스 개선의 달성

- 2003년 12월 수상의 공표에 따라 재정위원회 사무처는 모든 부처와 산하 공기업들이 자체 기관에 대한 '사업활동 체계도(Program Activity Architecture: PAA)를 완성하도록 요청함. PAA를 개발하는 첫 단계 부처는 자신들의 사업 활동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만들고 부처, 중앙관리기관 및 의회의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정보로 제공됨

(3) 지출 심의 절차

- 2003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모든 연방 정부의 지출을 심의하는 지출심의 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 ERC)라고 하는 새로운 내각위원회를 설치함. 이 위원회는 정부 지출이 적절한 통제 하에 있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우선 순위와 일치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신중하게 투자되도록 담보함

- ERC는 공익, 정부의 역할, 연방주의, 협력관계, 지출 대비 가치, 능률성, 유지 가능성 일곱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업과 정부 지출을 평가함

3.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1) 부처별 자체평가 조직

- ‘평가정책’은 재정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부처라고 간주되는 87개 기관에 적용됨. 이 중 42개 부처는 평가 기능이 있으나, 45개 기관은 대체로 소규모의 기관으로 충분한 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부처나 청의 사무차관(deputy minister)이나 부기관장은 부처의 필요나 자원 형편에 따라 정책 또는 사업들을 평가 하는데 적절한 기능을 부처 내에 설립할 책무를 짐. 부처별 평가 부서장은 부처 내의 평가 업무를 지휘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고, 부처의 관리자들은 결과 중심으로 관리하여야 함

2) 자체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1) 자체평가 방법

- 부처내의 평가 업무는 부처 감사·평가위원회(Departmental Audit and

Evaluation Committee: DAEC)에서 총괄함. DAEC는 부처의 평가계획, 개별 평가의 수행 조건, 감사 및 평가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평가에 대한 환류 및 모니터링의 수행을 포함한 관리활동 계획을 점검함

- 각 부처는 평가 업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처 평가계획을 위협, 부처 우선 순위 및 전반적인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각 부처는 신규 또는 연장된 정책·사업에 대하여 '결과 중심적 관리책임 기본틀(Result-based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Frameworks: RMAF)'을 개발,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성과측정 업무를 실시, 부처의 사업 활동 체계도와 RMAF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정책·사업의 초기 집행과 관리 평가, 지출심의위원회의 관련성, 결과 및 비용 효과성 관련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준거

- 캐나다에는 '캐나다 정부의 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있음. 이 기준은 각 부처에 평가 업무의 품질 개선의 근거를 제공하고, 평가 총괄기관인 재정위원회 사무처에 대해서 평가 정책의 집행을 점검하는 근거를 제공함. 평가 기준은 평가기획과 평가주제, 능력, 객관성과 성실성, 자문과 조언, 측정과 분석, 보고임

3)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되며, 부처와 기관은 문서화된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입증하여야 함. 모든 평가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 재정위원회도 이 보고서를 새로운 자금 지원 신청 결정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이용하고, 지속적 사업 운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임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 지방정부의 평가 실시 법적 근거

-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총괄적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나,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행정관리의 핵심적 부분으로 인식하고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또한 각 주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입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과관리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음

2)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운영 실태

- 오타와 시저어부는 2003년 시의회의 결정으로 '보편적 사업검토'를 실시하였음. 이 보편적 사업 검토의 목적은 시가 제공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고, 서비스 수준과 전달을 검사하고자 하는 것임

제 3 절 영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 평가제도의 개관

1)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영국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본격적으로 평가 제도를 도입함. 영국은 예산과정을 통하여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재검토하며, 정부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구로 평가를 활용하였음
- 1979년 대처 수상이 내각을 이끌게 되면서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한 성과관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1997년 블레어 정부가 들어선 뒤 재정지출과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명확히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층 강화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됨

2)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 영국의 평가 관련 조직은 수상실 직속기구로 설치된 전략단, 전달단, 공공서비스혁신실 등이 있고, 내각에는 재무부의 세출팀과 공공서비스국이 있음. 중앙정부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으로 의회 소속의 감사원이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으로 감사원 및 지방정부로부터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있음
- 재무부의 평가 활동 근거가 되는 법규는 '정부자원 및 계정법'이며, 감사원에 관한 규정은 1914년 공공 부문에 대한 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고 1960년 이후 재정성과 평가 및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요
구로 ‘국가감사법’에 반영되었음. 지방정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의
정책평가 근거는 1982년에 개정된 지방정부재정법과 1998년에 제정된 감
사위원회법임

3) 평가 대상 및 평가 방식

- 전략단은 평가의 대상을 정형화하지 않고 수상과 내각에 주요한 정책 문
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 공공
서비스협약에 대한 성과평가는 최소한 매2년마다 시행되지만, 수상실의
전달단에 의하여 우선순위 검토, 성과 향상 실적 평가, 부처와 일선 공무
원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상호 점검 회의 등을 통하여 각 부처의
성과를 모니터 하거나 평가함. 재무부의 평가 대상은 각 부처나 공공기관
들이 재무부와 체결한 공공서비스협약에 포함된 프로그램 또는 사업이며,
감사원의 평가 대상은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공공재원 전반임

-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 공공 서비스 전달
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거 자료의 체계적 검증, 정
책의 시범 실시, 시범 사업, 프로그램의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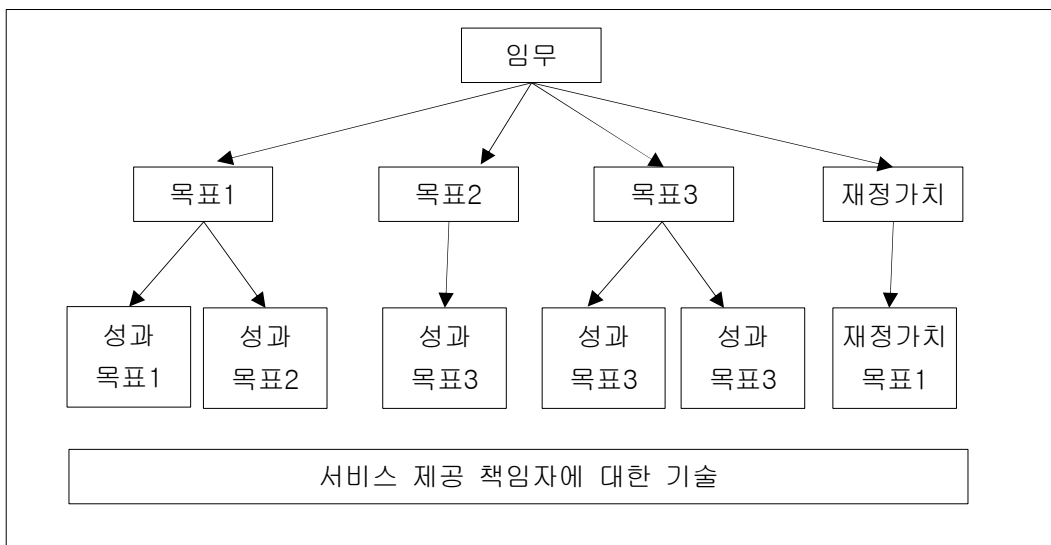
2.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1) 재무부의 종합세출심사

(1) 제도 운영 실태

- 영국 정부의 공공 지출과 재정 체계는 한편으로 건전한 공공재정을 유지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서비스의 질과 비용 대비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임
-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은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의 주요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 주고자 하는 제도임. 정부의 주요 부처는 하나의 목적과 다수의 목표들, 그리고 열 개 이하의 성과목표를 포함하는 PSA를 마련하는데 성과목표들은 상위의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고 투입보다 결과, 즉 효과 지향적이어야 함

<그림 3-2> 부처별 PSA의 구조



- 서비스전달협약(Service Delivery Agreement: SDA)은 PSA에 제시된 부처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는 계획으로 PSA 마련 대상이 아닌 작은 규모의 부처들은 SDA에 목표와 성과목표들을 포함함
- 재무부는 각 부처 예산 통제를 위해 세출심사(Spending Review)와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사용함

- 세출심사는 PSA 및 SDA와 연계된 예산편성 과정으로 종합세출심사보고서는 각 부처의 목적과 목표체계를 검토하고, 이 목표 체계를 위한 세출계획의 효과성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는 것임
-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에 의한 평가는 각 부처의 재정 집행을 일반지출 부문과 자본투자사업에 대한 것으로 나누고, 재무부에 설치된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rectorate)에서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함

(2) 평가 결과 활용 및 효과

- 블레이어 수상이 내각을 이끌게 됨으로써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를 내각이나 공공기관의 자원배분, 즉 예산 편성에 연결시키고자 하였음. 대표적인 성과관리제도인 PSA제도는 각 부처가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정치적 압력 기제로 작동하여 부처의 실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들의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침. 또한 행정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기의 예산 배정시 보상이나 제재를 받게 됨

2) 감사원의 성과평가

(1) 제도 운영 실태

- 감사원장 내부각처, 독립행정기관(executive agencies), 기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와 성과감사를 실시함

(2) 평가 결과 활용 및 효과

- 감사 또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감사증명서(audit

certificate), 성과감사보고서(value for audit report), 감사원 연차보고서 등을 통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

- 감사 결과 제시된 정책 제언들이 야기한 변화와 그로 인한 효과를 측정 또는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를 통해 재정 절약 효과를 가져왔고, 성과감사를 통해 재정 절약 및 내부절차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3.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1) 부처별 자체평가 조직

- 각 부처별로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공통적인 조직은 존재하지 않고 자율적인 판단과 방식으로 필요한 평가를 수행함. 어떤 부처는 분석과 평가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부처는 필요시 위원회 등의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

2) 자체평가 방법

- 부처 내 주요 프로젝트별로 구성된 위원회는 승인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재무부의 정기 모니터링에 대비하나 일반적으로 재무담당 조직이 평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또한 각 부처는 예산 편성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도 스스로 특정 정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느낄 때, 부처 내·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 등에 관한 연구 또는 평가를 수행함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 지방정부의 평가 실시 법적 근거

- 감사위원회가 지방정부 감사를 수행하며, 지방정부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들의 행정 서비스 수준과 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2)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운영 실태

- 지방정부의 경우 자체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를 담당하는 감사관이 책임을 지고 적절한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함. 선정된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각 지방정부는 감사위원회가 제공하는 자체평가안내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함
- 평가 방법은 감사위원회에서 포괄적 성과측정위하여 작성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를 이용함. 포괄적 성과측정은 지방정부와 감사기관 사이에 감사와 평가에 대한 상호 조절 및 재량과 자율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3) 평가 결과의 활용

- 감사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백서로 발간함. 지방정부가 설정한 성과목표는 지방정부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이기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강함

제 4 절 프랑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 평가제도 개관

1)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프랑스의 평가제도는 공공정책 결정의 합리성·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발전되었음. 1970년대 이후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시범을 통하여 발전하여 온 평가제도는 정부개혁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2001년 8월 제정된 예산성과관리법(LOLF)을 통하여 프랑스 평가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됨
- 프랑스에서 평가란 본질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활동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및 수단등과 관련된 제반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과 지향적 행정을 지향하려는 배경에서 평가제도의 유용성이 확대·심화되었음

2)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 프랑스에서의 평가제도 발전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제1기는 다양한 제도적 실험기였던 1990년대 초 이전, 제2기는 국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기능이 심화·확산되었던 1990년대 초부터 국가평가위원회가 설치되었던 1998년까지, 제3기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을 반영하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한 1998년 이후로 구분 할 수 있음
- 1989년 정부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평가협의

체'와 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을 연구하는 '과학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윤기석·홍재환, 2003) 그 후 1998년 수상령에 의해 설치된 국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2001년 제정된 재정법으로 인해 활동은 중단됨

3) 평가 대상 및 평가 방식

(1) 계획협약 평가의 개념

- 계획협약이라 지칭되는 중앙-지방간 협력 사업은 지역사업에 대하여 중앙 정부가 총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평가 방식으로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하는 도시정책, 직업훈련, 환경 정책, 교육정책, 지역 복지 등 분야의 협약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임
- 평가의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계획 및 목표 대비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며, 특히 성과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수행함

(2) 평가주관기관

- 평가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성되는 평가기구(평가조정위원회)와 중앙정부차원에서 협약평가를 지원하는 중앙평가기구(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 협약사업평가단)로 구분 함

(3) 평가 방법

- 평가 방법의 근간인 지표체계는 유용성, 적정성, 신뢰성, 투명성 등의 가

치체계를 반영함. 즉 평가 결과가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담당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통일·유사한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접목 가능성의 원리도 반영하고 평가 과정 및 평가 수단에 있어서 투명성의 원리도 지표 구성에 고려되고 있음

<표 3-9> 도시정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고용, 경제활동 지원	정책의 명확성: 계량지표
	실업률 정도: 계량지표
	고용률 정도: 계량지표 및 미취업 고용인력과 면접조사
	경제활동률: 계량지표
	낙후 상권지역의 상인 지원: 투입된 재정도 측정(계량지표)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접근성	취업 인력과 면접조사
	건강: 보고서 실무자와 공청회 개최, 광영도 건강관리국 실무자와 면접조사
	우체국: 면접조사
주거, 교통, 도시화	주거문제 개선, 공공공원 관리 개선: 계량지표
	주거, 교통, 도시화 개선 정도: 계량지표, 면접조사
교육, 환경, 학교	교육환경 개선: 면접조사(면접조사 등급을 여러 분류로 구분한 다음 실시)
	환경문제 개선: 광영도 환경국으로부터 획득한 계량자료 활용
학교 안전, 우범 지역 범죄 예방	우범지역 안정 예방: 계량지표(광영도 청소년보호법률국으로부터 자료 획득), 면접조사(현장 경찰관과의 인터뷰)

2.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1) 성과관리제도

- 프랑스 성과관리제도의 근간은 각 부처의 자체평가감찰기관인 자체평가감찰총국, 1998년 11월 정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정책평가위원회, 2001년 8월 제정된 재정법 등임.
-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는 2001년 8월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재정법임. 공공부문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 성과관리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프랑스 최초의 성과관리 통합법이라 할 수 있음. 다른 주요 평가 선진국과 달리 프랑스 정부의 성과관리는 이 법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의회가 최종확인(예산안 확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관계 정립

2) 국가평가위원회 역할과 활동

(1) 평가 주체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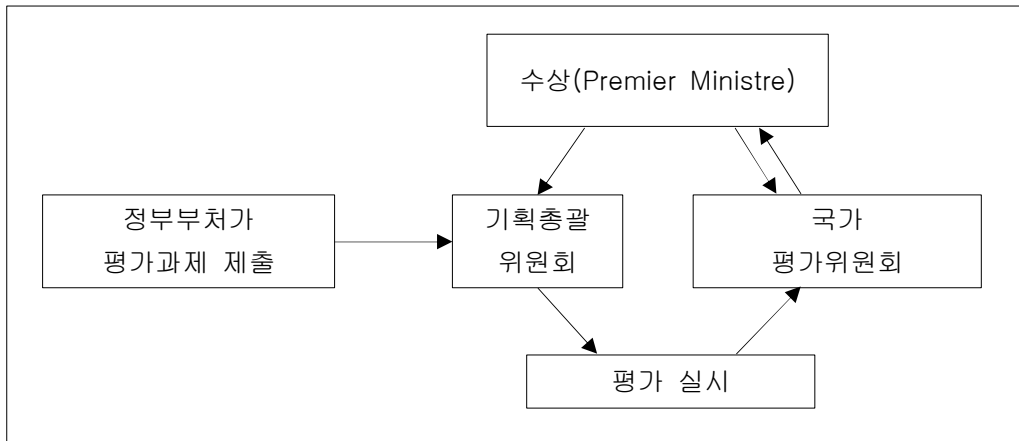
- 국가평가위원회는 기획총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책을 평가함

(2) 평가 절차

- 국가평가위원회가 매년 수상, 부처장관, 참사원, 회계감사원, 사회경제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위원연합회 등에 평가계획서를 수상에게 제출하

면 이를 수상령으로 공포 함. 평가단은 평가결과를 국가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상위평가를 시행한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 관련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연간 평가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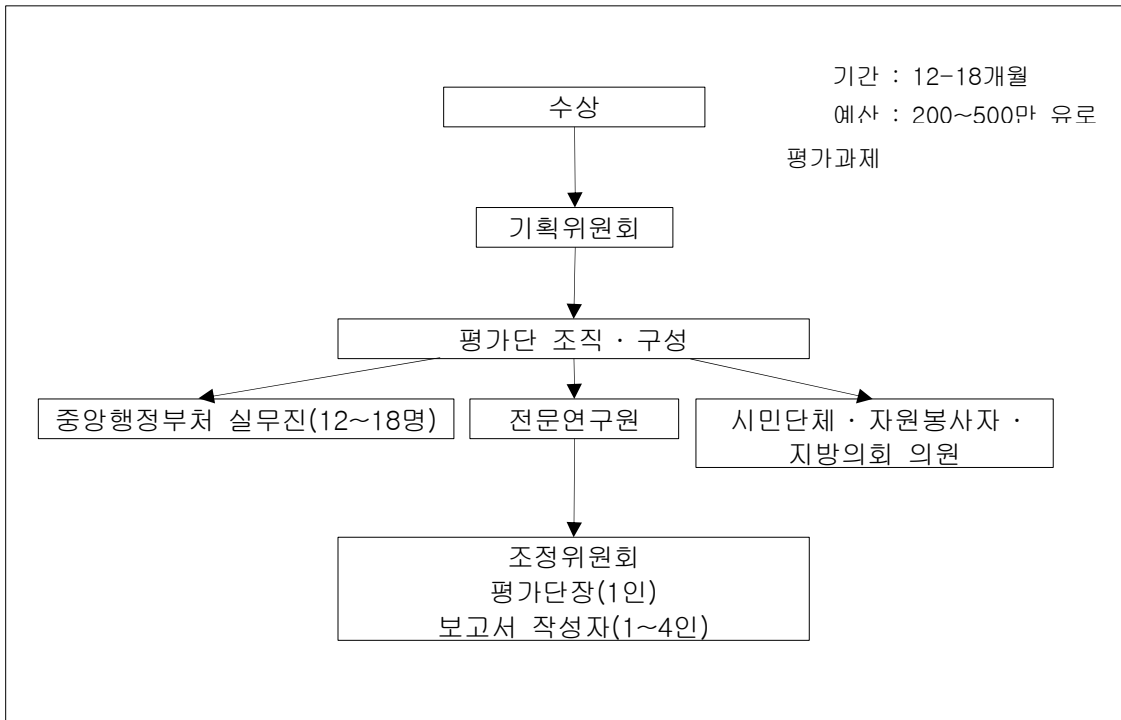
<그림 3-3> 프랑스 정책평가 체계 흐름도



(3) 추진 체계

- 국가평가위원회의 평가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구는 기획총괄위원회로 주요 국정 과제에 해당 평가 연례계획이 확정되면 수상으로부터 평가계획을 시달 받은 후 평가단을 구성함

<그림 3-4> 평가 업무 추진 체계



(4) 평가 활동

- 국가평가위원회 평가 활동의 주요 대상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중장기개발계획협약사업'과 중요한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임.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정책 전반을 모두 총괄하는 통합적 평가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자의 주요 관심 정책 평가 및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부정책의 성과 평가에 초점을 두었음

3) 재정법

(1) 성과관리의 주체와 대상

- 2006년부터 하원과 상원의 재정상임위원회는 재정성과관리의 주체로 예산 집행 감독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한 평가를 수행함

- 행정부 내에서는 경제재정산업부 소속의 예산혁신국(DRB)과 성과관리범부처협의회(CIAP)가 각 부처의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함

(2) 성과관리의 방법 및 절차

-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 상정과 관련하여 3/4분기 중에 국가경제 발전 동향 및 재정 운영 방향 보고서를 제출하며, 정부의 보고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심의됨.
- 정부예산안은 부록으로 연간성과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성과관리계획서에는 추진계획, 관련 예산, 목표, 예측 결과, 성과지표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성과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적절성·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표 점검, 보완 등의 개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3) 의회의 역할

- 미국의 OMB나 한국의 예산정책처와 같은 의회 소속의 평가조직은 없으나 하원 및 상원의 재정위원회가 평가기구로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함

<표 3-10> 재정법에 따라 작성될 성과보고서 및 의회의 예산성과 심의

구분	프로그램 연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주기	-매년 향후 1년간의 성과계획 보고	-전년도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주요 내용	-부처 임무 및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 설명	-부처의 임무 및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내용 설명
	-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제시	-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보고
	-성과지표 제시	-성과지표 보고
	-전년도 달성한 결과 제시 및 차년도 달성할 결과치 제시	-전년도에 달성한 사업결과를 요약 설명
	-부처의 사업 프로그램 별 최소 5개 성과목표 제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달성계획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 보고
	-사업 프로그램별 최소 2개의 성과지표 제시	-사업예산 보고
	-전년도 예산 지출과 관련된 예산증가액 보고	-차년도(n+1)정부예산안 심의 전에 전년도(n-1)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
	-익년도 정부예산안 첨부 보고	
비고	-매 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	-매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프랑스 재정법의 핵심은 결과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성과의 평가임. 즉 성과관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예산 운영의 투명성, 국민의 정책만족도 제고, 행정 서비스의 발전 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관리 지표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3-11>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예시

평가의 관점	평가 분야	성과목표 예시	성과지표 예시
시민	사회·경제 효과성	범죄 방지 향상 노력 정도	범죄 방지 향상 비율
		국제 안보질서 강화 노력 정도	테러리즘 방지와 억지에 프랑스 정부의 참여 정도
행정서 비스 이용자	행정 서비스의 품질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물 건축 허가증 발급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정도	건설교통부 지방 소속기관의 업무 중 도시건물 건축허가증 발급과 관련되어 법령으로 정해진 발급기간 내에 처리한 실적
		고용시장 활성화 노력 정도	국가취업알선소개소에 의하여 추천된 취업자에 대하여 만족한 기업의 비율
납세자	관리의 효과성	재무행정 관리비용의 효과적 활용 정도	생산성 확보 정도
		사법 처리 효과성 향상 정도	행정재판소에서 재판부에 의하여 판결된 행정소송 건수

출처: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l'Industrie, un nouveau cadre budgétaire pour réformer l'Etat, Paris, septembre 2004.

- 의회는 재정성과관리법에 기초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다른 좀 더 정교화된 재정성과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여 정부의 예산을 통제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것임

(4) 회계감사원의 역할

- 회계감사원은 의회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정부재정 지출 및 공공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함.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재정 행위에 대한 집행관리(수입 및 지출행위의 적법성, 회계관리의 합규성 등)와 관련된 감사 이외에 성과감사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도 수행함

3. 자체평가의 운영 실태

1) 부처별 자체평가조직

- 프랑스 정부부처의 자체평가는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가장 대표적인 자체평가기구인 '자체평가감찰총국'임

(1) 재정평가감찰총국

- 재정평가감찰총국은 재정경제산업부 소속 기관으로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자체평가감찰기관임. 1816년 설치된 이래 자체평가 업무와 공적 자금 집행기관에 대한 회계감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12> 재정감찰총국의 분야별 평가 활동 비중

재정평가 감찰총국의 활동 분야	2004년	2003년
재무행정 분야	32%	25.3%
경제, 재정, 산업 분야	13%	13.4%
보건, 사회, 주택 분야	12%	18%
문화, 연구, 교육 분야	6%	12.4%
국제사업, 협력 사업 분야	6%	7.1%
환경, 내무행정 분야	10%	6.6%
인사 및 조직 관리 분야	10%	6.2%
농업, 국방, 사법 분야	3%	5.1%
건설, 교통, 환경 분야	9%	4.8%
기타	1%	1.1%

- 재정평가감찰총국은 경제재정산업부 장관의 명을 받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재정사업 및 현안에 대한 조사, 평가, 감사 업무를 수행함. 특히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성과관리, 조직 및 인적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2) 행정평가감찰총국

- 행정평가감찰총국은 내무부 장관의 직속 보좌기관으로 내무부 기관, 소속 기관, 지방의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인사감사, 직무감사, 부처사업평가, 직원교육, 해외 협력 등에 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함
- 수상 및 장관, 다른 부처 장관의 명을 받아 내무부가 아닌 다른 부처 업무에 대한 평가와 감사도 실시 할 수 있으며, 내무부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행정관서에 대한 조직관리평가와 직무평가를 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와 연구 업무를 수행함

(3) 사회업무평가감찰총국

- 사회업무평가감찰총국은 고용연대부 장관의 직속보좌기구로 보건·의료·사회보장 등과 같은 사회사업 모든 분야에 걸친 평가 및 감사를 총괄함
- 노동, 의료, 사회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행정기관, 공공의료기관, 사회보장기관들에 대한 직무감사, 행정감사, 사업평가, 조직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감찰총국은 평가 대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탄력

적으로 적용하는 바 통계, 법·제도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대면조사 등과 같은 다차원적인 방법론을 활용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평가를 수행함

- 분석·평가 작업이 종료되면 평가감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평가내용을 작성함

3) 평가 결과의 활용

- 자체평가감찰총국이 작성한 보고서는 장관에게 보고되고 장관은 이를 토대로 평가 대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활용하고, 해당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1차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됨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 지방정부의 평가실시 법적 근거

-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 후 광역도, 도, 기초자치단체 등 계층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 성과감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하는 형식이 아니고 자치단체 스스로 규칙을 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 지방정부 평가제도 운영 실태

(1) 자치단체 자체평가감찰실 운영실태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감찰실의 설치는 조례나 단체장의 규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자체평가감찰실을 운영한다고 할 수 없지만 지방 대도시의 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자체평가기구를 설치하여 평가감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자체평가감찰실의 설치 목적은 시장이 주관하는 자치사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좌하는 것으로 시장의 명을 받아 지방공무원의 부패방지, 여러 부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시장에게 보고함

(2) 평가감찰실의 조직 구성 및 인적 구성

- 프랑스 지방분권법에 따라 상위 자치단체는 하위 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재정 등의 감독, 통제 업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하는 자체감사평가인력의 충원과 인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음

3)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 평가감찰관은 감찰 결과 불법행위나 피감 부서 기능의 부적절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 재정, 기술적 개선책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장은 감찰 결과 징계의 필요가 있는 경우 피감찰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음

제 5 절 호주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 평가제도 개관

1)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 호주의 평가제도는 다양한 측면의 도입 배경을 가지고 있음. 1987-1988회계연도부터 시행된 과제관리 및 예산제도(Project Management and Budgeting: PMB), 1995년부터 시행된 성과정보심의제도(Performance Information Review)를 통한 성과정보의 강조와 1997년에 제정된 일련의 법률, 1997년 12월에 제안되어 1999-2000회계연도부터 도입된 수익에 기초한 결과·산출 예산편성 및 보고제도(Accrual-based Outcomes and Outputs Budgeting and Reporting Framework)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프라를 형성하여 옴
- 호주의 평가제도의 목적은 사업, 예산 그리고 성과의 통합적 관리는 물론 공공의 책무성 향상에 있음

<표 3-13> 호주의 평가제도 개관

회계 연도	구분	내 용
1987~1998	평가 대상	-호주 행정 서비스
	평가 체계	-재무부(DOF): 평가의 전반적 조정 및 촉진 -개별 기관 : 평가의 일차적 책임
	평가 방법	-개별 기관 : 기관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에 재무부 제출 -3~5년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중점평가 실시 -주요 신규 정책안은 평가계획을 포함
	평가 결과 처리	-개별 기관에서 예산을 포함한 프로그램 관리와 의사 결정에 활용 -주요 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
1999~현재	평가 대상	-호주 행정 서비스
	평가 체계	-재무행정부(DOFA) : 성과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 -개별 기관 : 성과관리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과관리, 성과측정, 평가 및 성과보고 수행
	평가 방법	-서비스 현장 : 국민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은 서비스현장을 작성하고 매년 그 성과를 연차보고서에 포함 -연차보고서 : 부처예산문에 기술된 성과, 결과 및 성과정보에 대비한 성과 내역을 수록 -정부부처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
	평가 결과 처리	-재무행정부는 각 부처의 연차보고서를 가지고 정부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제출하고 수상은 이것을 연방의회에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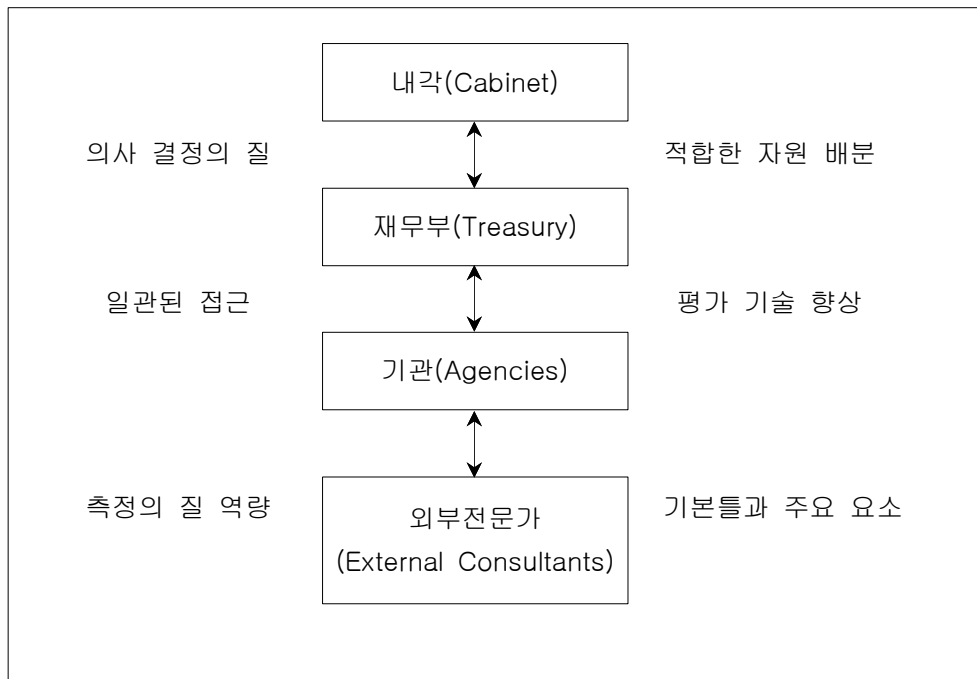
※ 출처: 한국전산원(1999)

2) 평가제도의 추진체계 및 법적 근거

- 호주 정부 전체 차원의 평가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관은 없고 평가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단, 재정관리차원에서 평가총괄은 재무행정부(DOFA)가 맡고 있음
- 재무성은 자체평가 지침과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고, 부처들이 직접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사업평가를 기획하고 실시하며 활용하는 책임은 개별부서나 기관에 있으나 재무행정부는 평가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예외적으로 주요한 사업평가에는 직접 참여하기도 함

-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총괄하는 기관인 감사원은 부처와 기관의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평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호주 정부의 평가는 과제관리 및 예산제도(PMB), 성과정보심의제도(PIR)를 비롯, 1997년에 제정된 일련의 법률, 즉 재정관리 및 책무법(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과 연방기관 및 회사법(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1997), 수익에 기초한 결과·산출 예산편성 및 보고제도(Accrual-based Outcomes and Outputs Budgeting and Reporting Framework)에 근거하여 수행됨

<그림 3-5> 기관별 평가 역할



3) 평가 대상 및 평가 방식

- 호주의 평가 대상은 기금의 확대를 요청한 사업, 기관이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사업 혹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 있음.

- 평가는 주로 사업의 원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이는 효과성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함. 그리고 재무행정부(DOFA)는 이러한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
- 평가지침 및 지표는 상위기관에서 작성·제공하고, 집행은 개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짐. 모든 행정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표준화된 평가지표는 없으나, 평가지침이 세부적일 경우에는 당해 평가지침이 적용되는 평가기관들에게는 표준화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호주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한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수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전반적인 평가 과정은 성과관리의 통합된 체계안에서 이루어지면, 자원 할당의 책임을 진 기관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함

2. 성과관리제도 운영 실태

1) 성과관리의 종류 및 방식

- 호주의 성과관리제도에는 성과정보심의제도를 확대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와 통합하여 예산 내용에 성과와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예산 관련 성과관리제도와 공공서비스 성과관리제도가 있음
- 호주는 예산과 성과(중앙·지방정부), 성과와 보수(지방정부)를 연계하지만, 그 밖의 다른 기능과의 통합이나 성과와 예산, 인사, 보수 간의 성과관리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성과관리의 운영 및 효과

- 각 부처는 예산서와 성과계획서가 결합된 예산법안(Budget Bill)에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포트폴리오 예산설명서에 부처의 임무, 성과목표, 산출 및 관리사업, 사업별 예산, 산출에 대한 성과 지표 등을 포함함. 이는 부처의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재무행정부에 보고하고, 재무행정부는 각 부처의 연간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부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상에게 제출, 의회에 상정됨

- 공공서비스 관련 성과관리제도는 호주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공공서비스법 및 호주 공공서비스 부문 협의를 위한 정책요소에 근거하여 주천하고 있음. 이는 호주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것으로 효과적 성과관리 체제, 성과와 보수의 연계, 비성과 부문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다룸

3.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1) 부처별 자체평가 조직

- 부처별 자체평가 조직은 존재하나, 평가 방법과 내용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국방부의 경우 국방 감찰관 산하 사업평가 조사국이 주요 국방 활동에 대한 적합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보건노인성의 경우 사업전략국이 부처 내 모든 사업의 평가를 총괄함

2)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 부처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사용할 뿐 표준화된 통합평가지표는 없고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지침만 작성하여 부처에 제공함
- 호주에서 평가는 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평가는 예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로써 사용되고 있음

4.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평가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지방정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2) 지방정부의 평가 실시 근거

- 호주 수도 특별구의 경우 재정관리법(Financial Management Act 1996)과 연간보고입법(Annual Reports Act 1995)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부서 및 산하기관의 연간 보고서에 대하여 기관의 집행관과 재무장관이 연간 재정 진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

3)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운영 실태

- 호주 수도특별고의 기관들은 계층적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음. 즉, 성과관리체제에 따른 평가, 개별적 관리를 위한 평가, 내부 감사, 회계감사원장이 수행하는 외부감사가 있음
- 평가위원회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나 평가결과와 인사 부문은 연계하고 있지 않음

제 6 절 일본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1. 평가제도의 개관

1) 평가제도의 도입 경위 및 목적

(1) 도입경위

-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차원에서 시작된 행정평가가 점차 다른 지방으로 확산 된 끝에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중앙 정부에 대한 정책평가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함.
- 1998년 6월 정책평가 기능 강화를 포함하는 '중앙성청 등 개혁 기본법' 공포를 시작으로 정책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이 공포되었고 2002년 4월 정책평가법과 정책평가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각 행정기관은 법률, 시행령, 기본 방침에 기초하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정책평가를 실시하게 됨

(2) 목적

- 일본 정책평가의 목적은 첫째, 국민 본위의 효율적 질을 높이려는 행정의 실현, 둘째, 국민적 관점에서 보는 성과 중시의 행정으로의 전환, 셋째, 국민에 대한 행정의 설명 책임의 강화임

2)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추진 체계

(1) 법적 근거

- 정책평가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 등이 있으며,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은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법으로 다른 정책평가에 관한 법령의 모범 역할을 함

(2) 추진 체계

-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성의 행정평가국이 담당함. 총무성에 의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각 부·성이 실시한 정책평가에 대한 심사평가, 2차평가, 대체평가, 공동평가임
-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는 정책평가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평가제도의 타당성 제고와 제도 운영의 개선에 기여함

3) 평가 대상 및 평가 방식

(1) 정책평가의 대상 및 유형

- 정책평가의 대상은 정책, 시책, 사무 사업으로 구분. 이러한 구분은 이상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현실의 정책평가 대상은 다양하고 세 개의 범주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평가시에는 각 부·성의 사명,

종합 목적, 정책목표, 시책목표 등의 계획 체계에 따라 평가함

-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 의하여 사전평가, 사후평가, 도중 평가로 나뉨

(2) 평가 방식

- 일본에서는 정책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사업평가방식’, ‘실적평가방식’ 또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표 3-14> 평가 대상에 따른 평가 방식

	사업평가(사전평가)	실적평가(사후평가)	종합평가
성격	사전에 평가를 실시해 행정 활동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정보를 제공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미리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측정해 정책의 달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특정 주제를 설정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 문제점의 해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대상	사무사업이 중심	주요한 시책 등	특정 정책이나 시책
시점	사전의 시점에서 평가하고 도중이나 사후의 시점에서 검증	미리 목표를 설정해 정기적·계속적으로 그 실적을 측정하여 목표료 기간 종료시에 해당 기간 전체에서의 달성도를 평가	정책 및 시책의 도입으로부터 일정기간을 경과한 시점을 중심
내용	-사전의 시점에서 미리 기대되는 효과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분석 및 검토 -도중, 사후의 시점에서 실시한 평가 내용을 검증	-주요한 시책 등에 관한 성과에 초점을 두고, 기본 목표 및 하위 달성 목표를 설정 -기본 목표에 여러 개의 달성 목표를 설정	-정책이나 시책의 직접적인 효과나 인과 관계 등에 대하여 분석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분석 -정책 및 시책의 목적 타당성을 검토

- 평가 주체에 따라 총무성이 추진하는 평가제도와 각 부·성이 추진하는 평가제도로 구분 됨. 전자가 실시하는 평가는 통일성 확보 평가와 총합성 확보평가와 같이 모든 행정기관을 포괄하는 정책평가와 개별 행정기관의 정책평가 실시 상황을 점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엄격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임. 후자는 국가행정조직법 및 내각부설치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기획·입안하여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 정책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실시함

(3) 평가 기준 및 지표

- 일본의 정책평가는 단순하면서도 일목요연한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평가법 및 시행령, 표준적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 등 정책평가 관련 법규들은 평가지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기준들을 기초로 통일적이며 공통적인 평가지표가 개발되고, 각 부·성의 특성에 맞게 수정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함

(4) 평가 절차

-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총무성이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성은 평가에 관한 3년 내지 5년 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2.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1) 자체평가조직 및 운영

(1) 평가 조직

- 각 부·성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각 부·성의 과 단위인 행정평가과나 총무과의 평가계 정도로 설치되어 있음

(2) 자체평가의 운영 절차

- 각 부·성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의 기본적인 절차와 순서 등을 규정한 실시 요령을 작성하고 평가 유형별로 평가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그리고 정책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및 정원을 요구하고 법령에 의한 제도의 신설·개폐, 각종 중장기 계획의 책정 등 정책의 기획·입안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2) 자체평가 지표 체계

- 각 부·성은 총무성이 제시한 기본 방침이나 표준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평가 관점을 토대로 하여 자체평가로 실시함. 일례로 문부과학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책평가기본계획'에 정책평가 기본 방침에 기술된 관점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현황

1) 지방정부의 평가 실시 근거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 2003년 7월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를 실시하는 근거를 조례, 규칙, 요강 등에 마련해 놓고 있음

<표 3-15> 행정평가의 실시 근거

(단위: 자치단체 수)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시구정촌
조례	3	0	7
규칙	1	0	8
요강	33	6	143
기타	13	7	258

※ 도도부현(46개), 정령 지정도시(13개), 시구정촌(406개)으로 한정함. 이 통계는 복수 응답이 있어 중복되어 있음. 참조: 이윤식 외(2004:192)

3) 지방정부의 평가제도 운영 실태

(1) 일반적인 행정평가 도입 현황

- 총무성 자치행정국 행정체제정비실이 2003년 7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평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16> 행정평가의 도입 상황

(단위: 자치단체 수)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시구정촌
이미 도입	46	13	406
시험중	0	0	266
검토중	0	0	1,398
해당 없음	1	0	1,124

※ 도도부현(46개), 정령 지정도시(13개), 시구정촌(3,194개)으로 한정함. 참조: 이윤식 외(2004:192)

(2) 행정평가 대상

- 2003년 7월 현재 일본의 자치단체별 행정평가 대상 정책, 시책, 사무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7> 행정평가의 대상

(단위: 자치단체 수)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시구정촌
정책	18	5	102
시책	35	8	215
사무사업	45	13	641
사무사업 모두	20	8	304
사무사업의 일부	25	5	337

※ 도도부현(46개), 정령 지정도시(13개), 시구정촌(672개)으로 한정함. 이 통계는 복수 응답이 있어 중복되어 있음. 참조: 이윤식 외(2004:192)

(3) 평가 결과의 공표 현황

- 2003년 7월 현재 일본의 자치단체별 행정평가 결과 공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이 통계는 예정을 포함함

<표 3-18> 평가결과의 공표 상황

(단위: 자치단체 수)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시구정촌
공표	46	12	285
모든 것 공표	45	12	187
일부를 공표	1	0	98
공표 안함	0	1	387

※ 도도부현(46개), 정령 지정도시(13개), 시구정촌(672개)으로 한정함. 참조: 이윤식 외 (2004:192)

(4)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 2003년 7월 현재 일본의 자치단체별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9> 평가결과의 활용 방법

(단위: 자치단체 수)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
예산 요구나 시정의 참고 자료	45	11
정원관리 요구 및 사정의 참고 자료	14	4
중점 시책, 방침의 참고 자료	30	3
사무사업의 재검토	41	12
종합계획 등 진행 관리	26	3

※ 도도부현(46개), 정령 지정도시(13개)이며, 복수회답이 있고, 예정을 포함함. 참조: 이윤식 외(2004:192)

SAPA 서울행정학회

IV. 결 론

SAPA 서울행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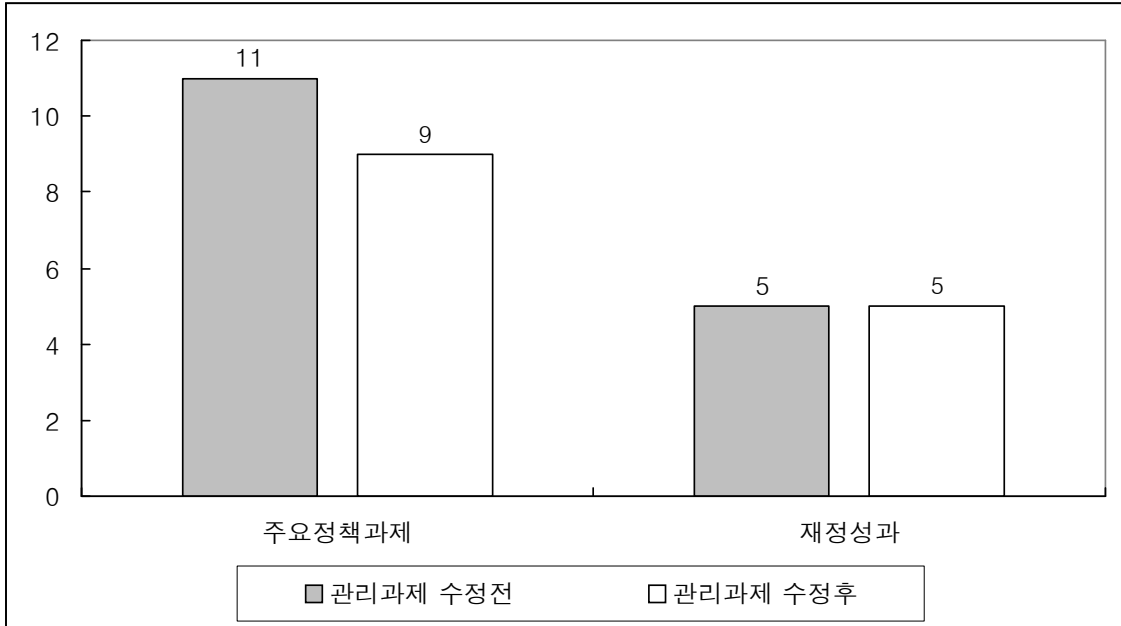
IV. 결 론

제 1 절 관리과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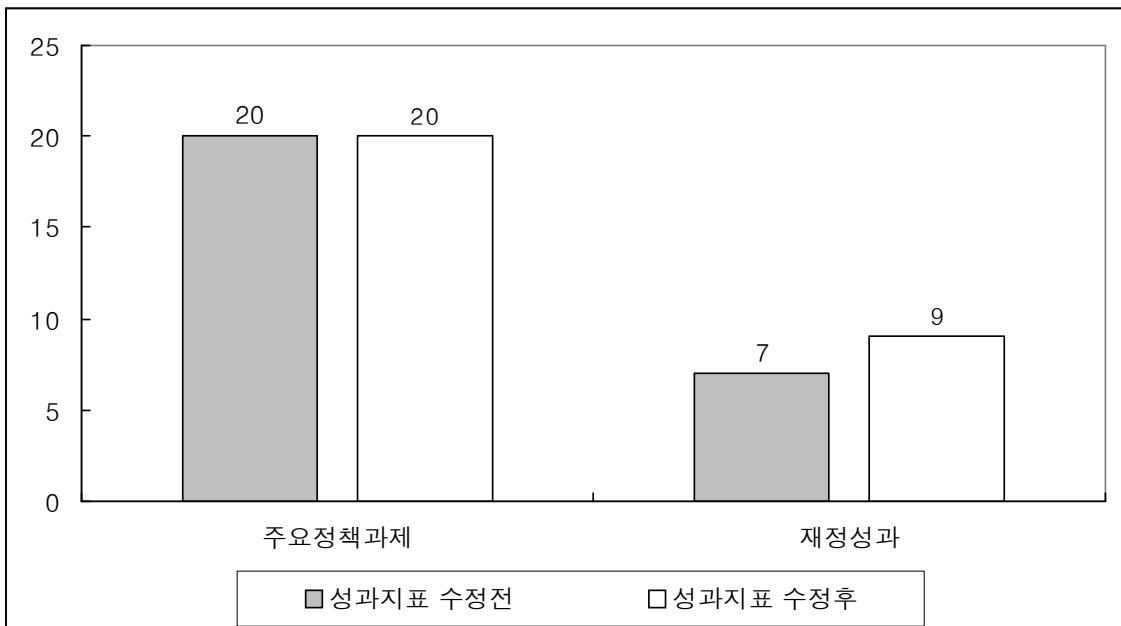
1. 관리과제 I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후	비교	전	후	비교
I -1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통계 제도를 정비한다.	주요정책 과제	3	2	-1	6	4	-2
	재정성과	1	1	0	1	2	+1
I -2 국가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 조정을 활성화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5	6	+1
	재정성과	1	1	0	1	2	+1
I -3 지역통계 작성지원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생산을 활성화한다.	주요정책 과제	2	1	-1	4	4	0
	재정성과	1	1	0	2	2	0
I -4 품질관리제도 정착 으로 국가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3	4	+1
	재정성과	1	1	0	1	2	+1
I -5 국제통계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통계를 선진화시킨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2	2	0
	재정성과	1	1	0	2	1	-1
계		16	14	-2	27	29	+2

- 관리과제는 16개에서 14개로 2개 축소되었으며, 성과지표는 27개에서 29개로 2개 증가하였음
- 관리과제 중 주요정책과제는 11개에서 9개로 축소되었으며, 재정성과는 5개를 유지하였음



- 성과지표의 주요정책과제는 20개를 유지하였으나, 재정성과는 7개에서 9개로 2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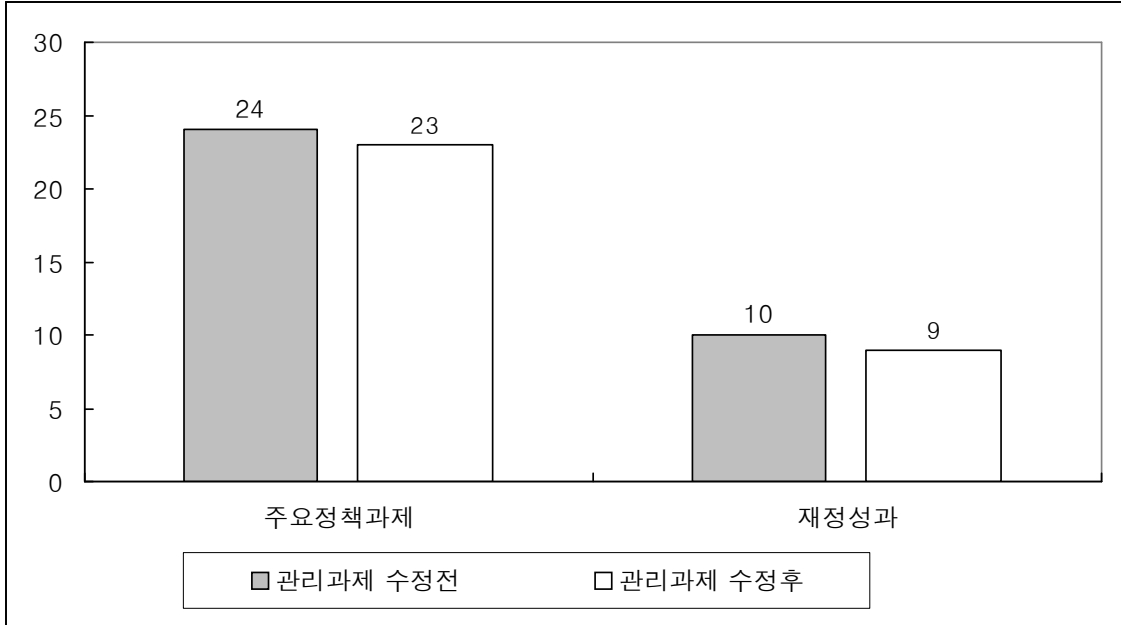


2. 관리과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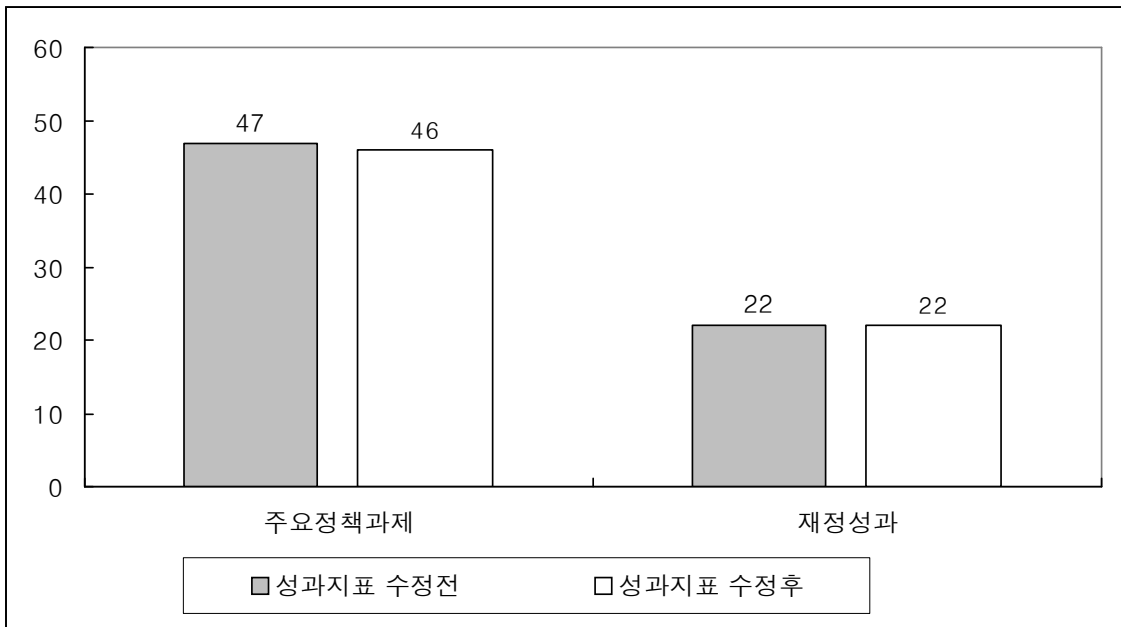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후	비교	전	후	비교
II-1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	주요정책 과제	7	7	0	13	13	0
	재정성과	0	0	0	0	0	0
II-2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통계를 개선한다.	주요정책 과제	7	7	0	14	14	0
	재정성과	0	0	0	0	0	0
II-3 조사체계 개선으로 대규모 통계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주요정책 과제	3	3	0	5	5	0
	재정성과	3	3	0	5	5	0
II-4 통계작성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통계의 이용 적합성을 높인다.	주요정책 과제	3	3	0	6	6	0
	재정성과	7	6	-1	17	17	0
II-5 조사환경에 적절한 조사방식의 활용으로 응답부담을 경감시킨다.	주요정책 과제	4	3	-1	9	8	-1
	재정성과	0	0	0	0	0	0
계		34	32	-2	69	68	-1

- 관리과제는 34개에서 32개로 2개 축소되었으며, 성과지표는 69개에서 68개로 1개 줄었음

- 관리과제 중 주요정책과제는 24개에서 23개로 1개 축소되었으며, 재정성과는 10개에서 9개로 1개가 줄었음



- 성과지표의 주요정책과제는 47개에서 46개로 1개가 줄었으나, 재정성과는 22개를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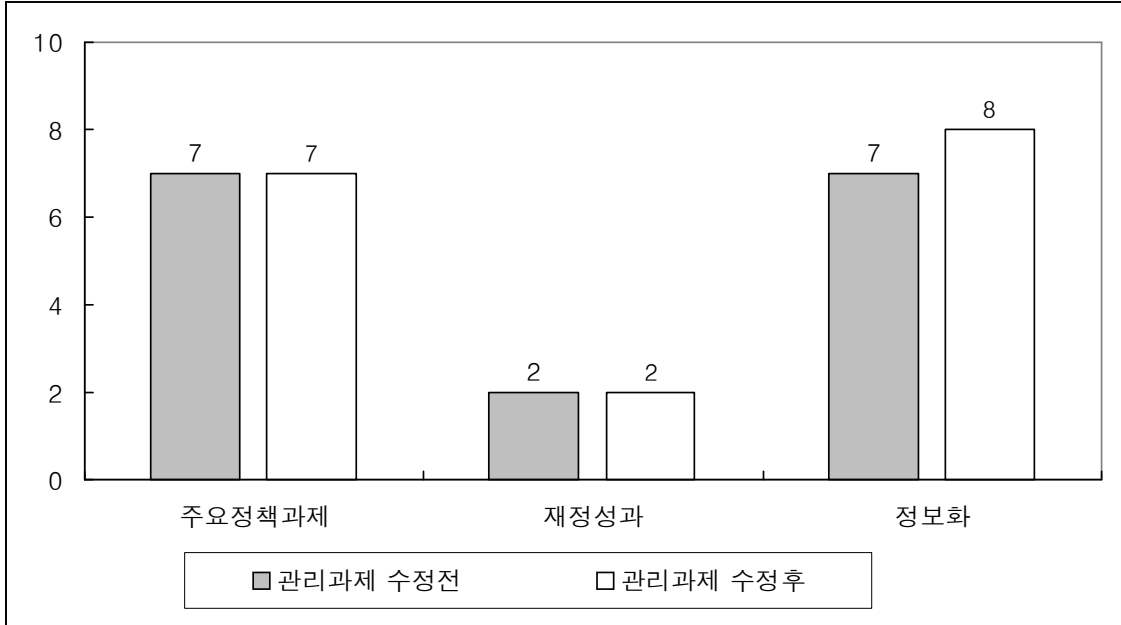


3. 관리과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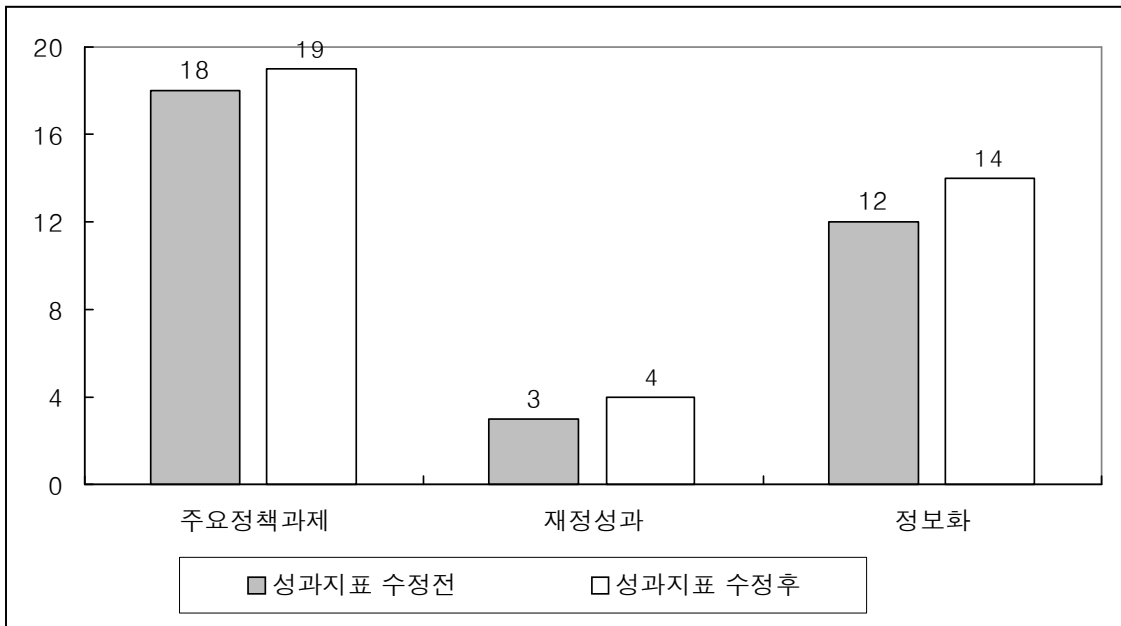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후	비고	전	후	비고
III-1 국가통계포털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통계를 편리하게 활용토록 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4	4	0
	정보화	1	1	0	2	2	0
III-2 통계정보 확충과 서비스체계 개선으로 통계정보의 이용을 활성화 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6	6	0
	재정성과	1	1	0	2	3	+1
	정보화	1	1	0	1	2	+1
III-3 지리정보(GIS)를 이용한 통계정보 제공을 활성화 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5	5	0
	재정성과	1	1	0	1	1	0
	정보화	2	3	+1	2	3	+1
III-4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통계를 서비스한다.	주요정책 과제	1	1	0	3	4	+1
	정보화	3	3	0	7	7	0
계		16	17	+1	33	37	+4

- 관리과제는 16개에서 17개로 1개 늘어났으며, 성과지표도 33개에서 37개로 4개 늘었음

- 관리과제 중 주요정책과제는 7개를 유지하였으며, 재정성과도 2개를 유지하였으나, 정보화는 7개에서 9개로 2개가 늘었음



- 성과지표 중 주요정책과제는 18개에서 19개로 1개가 늘어났으며, 재정성과도 3개에서 4개로 1개가 늘어났으나, 정보화는 12개에서 14개로 2개가 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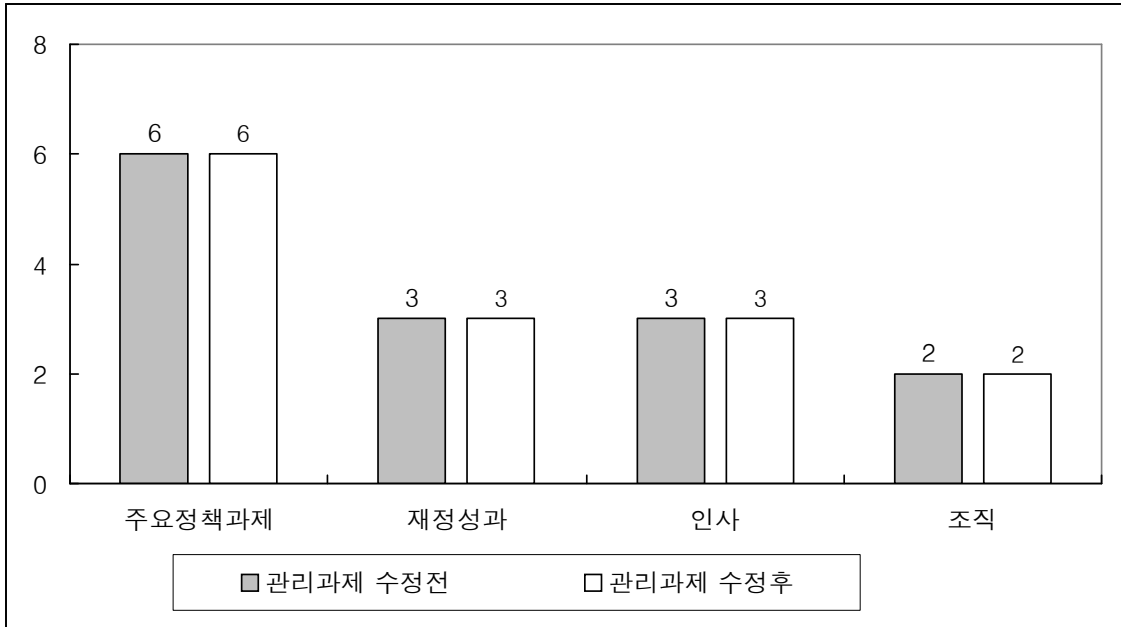


4. 관리과제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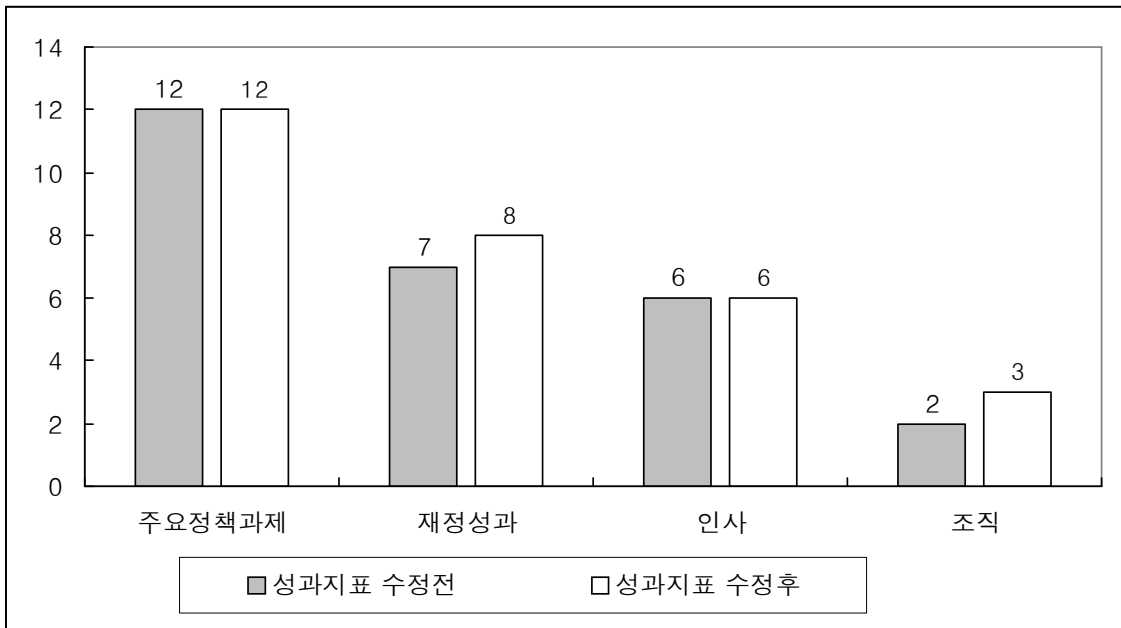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후	비고	전	후	비고
IV-1 성과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사	3	3	0	6	6	0
IV-2 전략지향적 조직 관리로 임무와 비전을 달성한다.	조직	2	2	0	2	3	+1
IV-3 국가통계발전을 선도할 통계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4	4	0
	재정성과	1	1	0	3	4	+1
IV-4 통계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통계를 작성한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5	5	0
	재정성과	1	1	0	3	3	0
IV-5 통계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통계인식을 높인다.	주요정책 과제	2	2	0	3	3	0
	재정성과	1	1	0	1	1	0
계		14	14	0	27	29	+2

○ 관리과제는 14개를 유지하였으나, 성과지표는 27개에서 29개로 2개 늘었음

- 관리과제 중 주요정책과제는 6개를 유지하였으며, 재정성과와 인사 그리고 조직은 각각 3개, 3개, 2개를 유지하였음



- 성과지표 중 주요정책과제는 12개를 유지하였으며, 재정성과는 7개에서 8개로 1개 늘었으며, 인사는 6개를 유지하였고, 조직은 2개에서 3개로 1개가 늘었음



제 2 절 통계청 성과관리 종합

- 통계청의 2008년도의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각 단위과제들 간에 연계성이 있고 다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과제는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과 함께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수정한 사례가 보임
- 통계청의 성과지표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표 4-1> 통계청과 특허청 지표 비교

부 문		통계청		특허청		비고
		개수(개)	비율(%)	개수(개)	비율(%)	
전략	목표	4	-	6	-	-2
성과	목표	19	-	18	-	-1
관리 과제	소 계	77	100%	51	100%	-16
	주요정책 과제	45	58.4	28	54.9	-17
	재정성과	19	24.7	14	27.5	-5
	정보화	8	10.4	4	7.8	-4
	인사	3	3.9	3	5.9	0
	조직	2	2.6	2	3.9	0

- 통계청 지표와 특허청 지표의 개수의 차이는 위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통계청의 지표의 개수가 많음
- 통계청에서도 개선 전에는 80개 지표였으나 이를 개선하고 조정하여 77개(-3)로 조정하였음. 하지만 지표가 아직까지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더 통합적인 지표개발이 필요함

-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성과지표를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것은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부합하기 어려움
- 특히 성과지표제시에 핵심은 객관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개발이므로 이에 따른 지표개발이 필요함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는 의미가 있고, 측정가능하며 일관성이 요구되나 성과지표라고 제시한 것들이 상위의 성과목표와 전략목표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음
 - 성과지표는 '인터넷 콘텐츠 개발통계'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조사결과 분석여부 확인'으로 되어있어 연계성이 떨어짐
 - 성과지표는 '산업구조통계 체계 개편단계'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추진계획 마련 여부 확인'으로 되어있어 연계성이 떨어짐
 - 성과지표는 '산업구조통계 체계 개편단계'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추진계획 마련 여부 확인'으로 되어있어 연계성이 떨어짐
- 또한 세부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명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었음
 - 측정방법은 당해연도 미승인 통계 승인화 조치건수(성취도 확인)이나 성과
- 사업의 궁극적 목적과 인계관계가 떨어지는 성과지표도 있었음
 - 통계조사 사례품 만족도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떨어짐
- 관리과제는 프로그램예산체계상 세부사업 수준으로 과제를 설정한 사례가 있으나 단위사업으로 과제를 수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보임
- 각종 통계수행업무는 하나의 과제로 통합 관리함이 필요함

- 관리과제별 설명자료는 사업목적을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목표치 산출근거를 제시할 경우 '전년도 실적반영' 등의 제시보다는 도전적이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체적으로 사업의 일부목적달성만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사업의 결과지표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온라인 간행물 전환 건수
 - 통합 DB의 구축
 - 국가통합통계 신규 서비스 기관수
 -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단계
 - 기초 단위구 이용률
 - 웹조사구 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장 point 구축광역자치단체수
- 실적 및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예를 들어 '06년에는 100건, '07년에는 120건, 목표인 '08년에는 10건으로 갑자기 줄어들 경우에 대하여 목표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음
 - 특히 이럴 경우, '전년도 실적 반영', '추세치 반영'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불명확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였음
- 또한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업무시 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 통계청의 기본 업무인 통계에 관한 통계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결과지표의 제시가 필요함

SAPA 서울행정학회

부 록

SAPA 서울행정학회

◎ 관리과제 I

전략목표

국가통계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가통계를 균형발전 시킨다.

1) 성과목표 I-1

성과목표

국가통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통계제도를 정비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제 이행률
- 통계분류 개발·개정건수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국가통계시스템의 개선·정비①
 - 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제 이행률 ①-㉠
 - 통계조사대행 건수①-㉡
-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지원②
 - 통계분류개발·개정 건수②-㉠
 - 분류질의 회신 소요일수②-㉡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통계정책추진①
 - 통계분류개발·개정 건수①-㉠
 - 분류이용자에 대한 만족도①-㉡

2) 성과목표 I-2

성과목표

국가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조정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 |
|------------------|
| ○ 유사·중복통계 정비 조치율 |
| ○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 |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에 대한 종합·조정 활성화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법 교육 및 홍보건수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통계 정비 조치율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승인통계의 승인화 전환 건수 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기본통계표준화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강화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약정 신규 체결 기관수 ②-㉡ |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조정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업무 추진 건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협력기관만족도①-㉠ |

3) 성과목표 I-3

성과목표
지역통계 작성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생산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지역통계개발지원 건수
○ 지역통계 생산대행 건수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지역통계 생산체계의 구축 및 개발 지원①
· 생산체계 구축단계①-a
· 지역통계 개발지원 건수①-b
· 지역통계 생산대행 건수①-c
· 지역통계 지원사업 만족도①-d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지역통계 작성기반의 조성①
· 지역통계 개발지원 건수①-a
· 지역통계 품질만족도①-b

4) 성과목표 I-4

성과목표

품질관리제도 정착으로 국가통계 품질을 향상시킨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 |
|------------------|
| ○ 품질진단 국가통계 종수 |
| ○ 통계품질진단결과 품질향상도 |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 |
|--------------------------|
| ▪ 국가통계 품질진단 실시① |
| · 통계품질진단 종 수①-㉠ |
| · 통계품질진단 결과 품질향상도(%) ①-㉡ |
| ▪ 통계작성기관의 자체 품질관리 활성화② |
| · 자체품질관리 교육실시②-㉠ |
| · 통계품질지표 및 매뉴얼 개발 건수②-㉡ |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 |
|----------------------|
| ▪ 통계품질관리 (일반회계) |
| · 통계품질관리사업 만족도①-㉠ |
| · 통계품질진단 결과 품질향상도①-㉡ |

5) 성과목표 I-5

성과목표
국제통계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통계를 선진화시킨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국제통계협력 교류 건수
○ OECD요구 통계항목 제공율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국제 통계활동의 강화①
· 국제통계 협력 교류건수①-㉠
▪ 국제 통계정보 교류의 활성화②
· 국제기구(OECD) 요구항목 제공율②-㉠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국제 통계협력①
· 국제회의 참가결과 정책반영률 ①-㉠

◎ 관리과제 II

전략목표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을 뒷받침하는 국가기본 통계를 생산·제공한다.

1) 성과목표 II-1

성과목표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신규통계개발건수 - 과거개발 추세 및 개발정책수요 에 따라 목표치 고려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지식기반서비스업실태조사 개발①
 - 지식기반서비스업실태조사 개발단계①-㉠
- 서비스업동향통계개발②
 - 인터넷콘텐츠통계 개발단계②-㉠
 - 소비재판매액통계 개발완료②-㉡
- 산업동향통계 개발③
 - 기업규모별 건설기성통계 개발단계③-㉠
 - 제조업 주요업종 평균가동률 개발단계③-㉡
- 경제통계 분석지표 개발④
 - 지역소득분배계정 개발단계④-㉠
 - 시·군·구 GRDP 추계개발지원④-㉡
 - 경기체감지수 개발단계④-㉢
- 사회복지통계 개발⑤
 - 소득분배관련지표 개발완료⑤-㉠

· 사교육비통계 개발완료⑤-㉑
▪ 인구동향통계 개발⑥
· 출생전후기 사망 및 사산통계개발 단계⑥-㉑
· 현재인구 개발단계⑥-㉑
▪ 불완전 취업에 대한 지표 개발⑦
· 불완전취업에 대한 지표 개발완료⑦-㉑

2) 성과목표 II-2

성과목표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통계를 개선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통계개선 건수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제조업 통계 개선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공표율①-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동향통계 개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년도 개편 완료②-①) · 연쇄지수 작성완료②-②) · 계절조정 적용 확대분야 수②-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통계 개선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업판매액지수의 소비재 상품군 수③-①) · 운수업통계조사의 업종 수③-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쇄방식의 소비자물가지수 작성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별 연쇄지수 작성단계 ④-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통계 개선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조사 항목분류체계개편 완료 ⑤-①) · 사회통계조사항목보완 건수⑤-②) · 생활시간조사 작성방법 개선단계 ⑤-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통계 개선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부가조사 조사대상 확대 ⑥-①) · 인력실태조사 특정계층 개발완료 ⑥-②) · 경제활동인구조사 계절조정 계열 확대⑥-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유형별 지표의 작성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유형별 지표작성 완료 ⑦-①)

3) 성과목표 II-3

성과목표
조사체계 개선으로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산업구조통계 체계개편단계
○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단계
○ 농림어업총조사 추진단계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산업구조통계의 체계개편①
· 산업구조통계 체계 개편단계①-①
▪ 효율적 인구주택총조사의 추진체계 확립②
· 인구주택총조사 사전준비②-①
· 시험조사시 인터넷조사 비율②-②
▪ 농림어업총조사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실시③
· 농림어업총조사 사전준비③-①
· 조사방법 개선 건수③-②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경제센서스 개발(일반회계)
· 경제센서스 개발단계①-①
▪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및 결과제공②
·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이용건수 (만건)②-①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품질만족도 ②-②
▪ 농림어업총조사 준비 및 결과제공③
· 농림어업총조사결과 이용건수 (만건) ③-①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품질만족도③-②

4) 성과목표 II-4

성과목표

통계작성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통계의 이용적합성을 높인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 |
|-------------------|
| ○ 국가기본통계 이용건수(만건) |
|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 |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의 적기 생산·제공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 이용건수(만건)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동향통계 공표일자 준수율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연간통계조사결과 공표시기 준수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의 체계적 관리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통계 응답률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지조사 정확성 측정점수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모집단 DB의 활용도 제고③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에 모집단 이용건수③-㉠ |

5) 성과목표 II-5

성과목표

조사환경에 적절한 조사방식의 활용으로 응답부담을 경감시킨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통계작성에 행정자료 신규활용 건수
- 전자조사기법 활용 통계 수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통계목적의 행정자료 활용 확대①
 - 통계작성에 행정자료 신규활용 건수①-㉠
 - 행정자료 신규공유 건수①-㉡
- 전자조사방식의 활성화②
 - 전자조사기법 활용 통계 수②-㉠
 - 광공업동태조사 CASI 조사율②-㉡
 - 사이버쇼핑몰통계 CASI 조사율 ②-㉢
 - 가계조사 전자가계부 이용률②-㉣
 - 고용통계 CASI 조사율②-㉤
- 조사목적에 적절한 표본 활용③
 - 지역통계 표본설계 통계 수③-㉠

◎ 관리과제 Ⅲ

전략목표

통계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여 통계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한다.

1) 성과목표 Ⅲ-1

성과목표

국가통계포털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통계를 편리하게 활용토록 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통계포털 이용건수
- 통계포털이용자 만족도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국가통계포털서비스 체계의 정착①
 - 통계포털 이용 건수(만건)①-㉠
 - 통계포털 이용자 만족도①-㉡
- e-나라지표의 활용도 제고②
 - e-나라지표 정책자료 확충률(%)②-㉠
 - e-나라지표 이용자 만족도②-㉡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 국가통계 통합DB의 구축(행정정보DB 정보화기금)①
 - 통합DB 신규 구축 기관수①-㉠
 - 국가통계통합 구축 협력기관 만족도 ①-㉡

2) 성과목표 III-2

성과목표
통계정보 확충과 서비스체계 개선으로 통계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통계DB 자료 수록량(백 만 계열)
○ 통계정보이용자 종합만족도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정보의 확충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DB 수록자료량①-㉠ · 통계정보이용자 종합만족도①-㉡ · 국제통계 DB 신규 테이블 수①-㉢ ▪ 통계서비스 방법의 다양화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메타 DB 이용 건수②-㉠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건수②-㉡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소요일수 ②-㉢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의 발간·관리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간행물 전환 건수①-㉠ · 온라인 간행물 이용 건수①-㉡ · 종합간행물 이용자 만족도①-㉢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축 (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단계①-㉠ · DW 기반의 마이크로데이터시범 서비스 실시①-㉡

3) 성과목표 III-3

성과목표
지리정보(GIS)를 이용한 통계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대상 광역자치단체수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건수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 건수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이용자 만족도(5점 척도)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②
· 센서스지도 DB 갱신율②-㉠
· 센서스지도 이용자 만족도②-㉡
· 개별정보(Point) DB 구축율②-㉢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기초단위구 관리(일반회계)①
· 기초단위구 경계갱신율①-㉠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 통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①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실시 광역 자치단체 수①-㉠
▪ 웹방식 조사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②
· 웹조사구 관리시스템 적용 지자체 수 ②-㉠
▪ U통계서비스 인프라 구축③
· 인프라 구축 광역지방자치 단체 수 ③-㉠

4) 성과목표 III-4

성과목표
통계생산 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통계를 서비스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EA 성숙도 수준
○ 웹기반 통계조사시스템 신규 전환 수
주요정책제 부문 성과지표
▪ 정보화 인프라의 강화①
· 전산장비 이용자 만족도①-③
· 1인당정보화교육이수시간①-④
· 정보화 교육 활용도①-⑤
· 정보보안 관리수준①-⑥
정보화 부문 성과지표
▪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일반회계)
· EA 성숙도 수준(단계)①-③
· EA 프레임워크 필수 산출물 구축 수①-④
▪ 통계작성시스템의 구축·확대 (일반회계)
· 웹기반 통계조사시스템 신규 전환 건수②-③
· 사업체통계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만족도②-④
· 시스템 개발 건수②-⑤
▪ 지식행정포털시스템 확대(일반회계)
· 지식행정지원포털 이용자 만족도 ③-③
· 업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목표 달성율 ③-④

◎ 관리과제 IV

전략목표

통계역량을 강화하여 국가통계 수준을 향상시킨다.

1) 성과목표 IV-1

성과목표

성과중심의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인사제도만족도
-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수용도

인사부문 성과지표

-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①
 - 인사제도 만족도①-①)
 - 상시학습제도 운영만족도①-②)
-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②
 - 인사참여율②-①)
- BSC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③
 - 성과관리제도 수용도③-①)
 - 성과관리시스템 활용도③-②)
 - 주요성과지표(KPI) 개선 수③-③)

2) 성과목표 IV-2

성과목표
전략지향적 조직관리로 임무와 비전을 달성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자체조직관리과제 추진율
조직부문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① · 자체조직관리과제 추진율①-㉠ · 총액인건비 의도적 예산절감(억원)①-㉡ ▪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② · 과장급 위임전결 비율②-㉠

3) 성과목표 IV-3

성과목표
국가통계발전을 선도할 통계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통계전문교육 과정 운영률
○ 통계전문교육 만족도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통계전문교육의 활성화①
· 통계전문교육 과정 운영률①-㉠
· 통계전문교육 만족도①-㉡
▪ 통계교육체계의 개선정책②
· 수사·순회과정 운영 횟수②-㉠
· 사이버과정 개설 건수②-㉡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통계교육의 확대①
· 교재표준화 건수①-㉠
· 사이버과정 이수율①-㉡
· 통계교육원 전체 교육이수자수 ①-㉢
· 교육이수자 업무활용도①-㉣
· 통계전문교육 만족도①-㉤

4) 성과목표 IV-4

성과목표
통계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통계를 작성 한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연구원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
○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 수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 실용성 높은 통계연구의 수행①
· 연구원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 ①-㉠
· 연구과제 평가점수①-㉡
▪ 통계연구의 기반구축②
· 연구개발협의체 운영 수②-㉠
· 전문연구결과물 산출②-㉡
· 연구성과 세미나 개최 횟수②-㉢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 통계기법 개발과 국제공동연구①
· 연구원1인당 연구과제 수행 건수 ①-㉠
· 국제공동연구 건수①-㉡
· 연구결과이용자 만족도①-㉢
· 외부수탁 통계작성 지원건수①-㉣

5) 성과목표 IV-5

성과목표
통계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통계인식을 높인다.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 통계청 인지도
주요정책과제 부문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인지도①-a · 통계활용사례 발굴홍보건수①-b ▪ 고객맞춤 홍보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ail 개봉률(%)②-a
재정성과 부문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홍보(일반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홍보효과 측정지수①-a